

# 梁濟海와 濟州백성의 ‘謀變’(1813) 다시보기

김정기\*

<차례>

1. 머리말
2. 제주 官吏의 謀變 조작과정과 朝廷의 추인
  - 1) ‘홍경래난’의 영향
  - 2) 相贊契의 폭력적인 조작 : 等訴에서 謀變으로
  - 3) 상찬계와 목사의 모변 각본 완성
  - 4) 조정의 모변 확정
  - 5) 察理使의 모변 추인과 등소의 부분 인정
3. 모변 조작의 몇 가지 사례
  - 1) 군사력의 허상
  - 2) ‘作別國’의 실체
  - 3) “나는 양을라(梁乙那)의 후손으로 김통정(金通精) 장군이다.”
4. 맷음말

## 국문요약

이 소품은 국가권력의 이중 폭력에 대한 고발이다. 하나는 사건 현장의 주민에게 가한 고문 폭력이고 또 하나는 이 고문의 결과로 날조된 허위 자백만을 사료로 잔존시키는, 역사 진실에 가하는 조작 폭력이다. 거의 2백 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의 의협인, 양제해 —글 모르는 데도 백성들이 따랐던, 사건 당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전 제주교육대학교 총장)

\* 2008년 11월 초부터 이글을 쓰기 시작한 지은이는 여러분에게서 귀중한 도움을 받았다. 제주도에 관한 첫 글인데다가 조선시대 형사제도에도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아 주대 법대 이현환·조지만 님, 제주대 현승환·김동전 님, 한국학 중앙연구원 심재우 님, 4·3 연구소 소장 박찬식님, 제주대 석사 이만옥 님께 이 터를 빌려 고개 숙인다.

시 풍현이면서 평민 지도자였던 양제해—의 복원과 해원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곁들여, 상찬계와 목사 주도의 추핵[심문]과정에서 장살(杖殺) 된 6명과 거의 반병신이 되어버린 42명의 '반란죄인'에게도 그 역사적인 복원과 함께 구천을 떠도는 혼령의 해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료에 접근하였다.

이 글은 1813년 초겨울 제주 아래 마을에서 백성과 양제해(1770~1813)가 모여 의론한 것이 등소(等訴)였지 변란(變亂)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황금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던 서리들의 이권조직, 상찬계(相贊契)의 착취와 횡포를 연명으로 시정하려는 등소모의였다. 그것도 등소하기로 약속만 하고 해어진 뒤 고자질로 좌절된 등소미수사건 이었다. 상찬계는 즉각 꼭두각시 목사를 앞세워 취회(聚會)하여 모의했던 그날, 저녁 즉각 장두 양제해를 체포하여 고문으로 죽여 버렸다. 이튿날 새벽의 일이었다. 목사는 모의 성격을 변란(謀變) 그러니까 반란으로 둔갑시켜 보고하였다. 일년하고 반년 전 '홍경래난'의 그 악몽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던 조정도 주저 없이 그 '모변'을 인정하고 말았다. 상찬계와 목사는 이 군사반란의 모의를 입증하기 위해 <차례>에서 보이는 여러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조정을 혐혹시켰다. 모병한 9백 명을 육지에서 구입한 포·조총·화약으로 무장하여 제주·정의·대정 세 읍을 동시 공격 점령하고 그곳 관장을 살해한 다음, 양제해가 도주(島主)가 되어 제주 별국(別國)을 선포한다는 각본이었다. 고문의 피로 엮은 각본이었다. 이 모두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 비운의 양제해는 후에 제주 민중의 영웅으로 부활하였다.

지은이는 이 복원과 해원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김익강(1753~?)과 이 강희(1789~?)에게 경의를 표한다. 「相贊契始末」은 두 분의 합작품으로, '모변'의 주모자로 몰렸던 金의 정직하고 정확한 구술을 받아, 다산의 제자 李가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현장 분위기를 적확하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주제어 : 等訴, 謀變, 相贊契, 供招, 推覈, 駆啓, 舉兵犯蠻, 募兵, 器械賀來

## 1. 머리말

크게 보아, 역사는 일어난 사실로서 역사와 이 사실에 관한 해석으로서 역사 들로 나뉜다. 이 소품은 1813년 제주의 한 사건에 관해서 사료 점검을 통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의 진위를 가리는 작업에 치중하므로 전자에 속하나 후자의 비중도 무시 할 수 없을 듯하다.

이른바 양제해(1770~1813) 모변은 1813년 음력 시월 그믐에 일어난 제주 백성[民人] 30여 명의 등소모의가 그 발단이었다. 목사에게 하소연하기로 결정하고 장두(狀頭 또는 狀首)로 양제해를 만장일치 추대한 뒤 해산했는데, 그날 밤 양제해 만을 체포, 심문[추핵]하는 과정에서 심한 장독(杖毒)으로 이튿날 옥사하였다.

등소의 집단 분노가 3백 여 서리들의 독점적 이권조직, 상찬계를 겨누었기 때문이다. 상찬계는 즉각 조치를 취했다. 등소모의(等訴謀議)<sup>1)</sup>로 끝난 등소미수 사건을 모변(謀變)<sup>2)</sup>으로 둔갑시켰다. 그러니까 '변란모의(變亂謀議)' 다시 말해 군사반란을 음모했다는 것이다. 조정으로부터 그 '모변'을 주인 받기 위해 입증이 필요했다. 고문이 뒤 따랐다. 제주 백성 모두를 공포의 족쇄로 채워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힘몰시키는 제주에서 보기드문 국가의 폭력잔혹사가 펼쳐졌다.

1) '等訴謀議'에서 '等'은 여럿이, 무리, 떼이고 '訴'는 하소연하는 것이다. '等訴'는 백성이 이 떼 지어 관에 가서 억울함을 소장(訴狀)에 적어 연명으로 하소연하는 비폭력운동이다. 자연 발생적인 분노의 비조직적인 집합에 기초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소연하는 내용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인 개혁을 지향하기도 한다. 등소가 저지당하면 그냥 자자러들거나 즉각 민란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等訴는 民亂의 전단계이다.

2) '謀變'에서 '謀'는 꾀한다, 도모한다 이고, '變'은 變亂이요 다른 말로는 '반란'이다. 물론 군사 반란이요 逆謀다. 兵亂이라 하기도 한다. 등소를 가탁하여 변란을 도모하는 경우는 드물다. 영조 때 '이인좌의 난' 순조 때 '홍경래의 난' 고종 때 '이필재의 난'이 그 표준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 잔혹사에 내장된 역사적 사실의 조명에 이 글의 주안점이 있다. 군사모집의 수준, 무기 확보의 규모, 동원신념체계의 허실 등을 분석함으로 해서 등소냐 모변이냐를 가리는 작업이다. 조정에 급히 보고한 제주 목사의 치계(馳啓)와 조정에서 파견된 찰리사(察理使)의 치계를, 최근에 발견된 「相贊契始末」<sup>3)</sup>과 비교하여 상찬계와 목사의 조작 전모를 밝혀낼 예정이다. 물론 목사의 치계 내부에서 발견되는 상호모순도 걸러냈고, 목사와 찰리사의 관점 차이도 집어냈다. 비교 모순 차이를 종합하면, 상찬계와 목사는 사실을 날조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인멸하는 조작의 만화경을 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소품의 입론(立論)은 1818년 유배지 흑산도에서 탄생된 「상찬계시말」이라는 사찬자료에 서게 되었다. 이 기록의 정확성과 진정성은 이 글의 전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포착하게 될 것이다. 지은이는 끝까지 상찬계와 목사의 구체적인 조작과정에 더 이성적으로 덜 감성적으로 접근 하도록 애썼다.

이 글을 작성하는데 두 분의 노작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권인혁 교수는 이 분야의 개척자로서 특히 '모변' 발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며 지은이와 달리 '모변'을 인정하는 논지를 지속하였다.<sup>4)</sup> 그때는 「상찬계시말」이 안 보였기 때문일 터였다. 박찬식 교

3) 「相贊契始末」의 탄생과정은 극적이다. '모변'의 쌍두거괴로 몰렸던 金益綱(당시 61세)은 찰리사 李在秀의 공정한 판결로 흑산도로 무기한 정배된다(1813년 윤2월). 유배 5년 뒤 그가 정약용의 제자 이강희를 우연히 만난 것은 변방의 척박한 토양에서 피워올린 조선지성의 꽃이 되었다. 당시 흑산도에서 유행하던 제주인 멸시관을 일거에 뉙어트린 金의 인격에 감복하여 李가 김의 '모변'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엮었다. 진솔함에 박진감이 결들인 이 글은 다산의 애민관(愛民觀)을 한 단계 더 승화시킨 변방 지식인의 분노에 찬 폐거였다. 이 저서는 일본 京都大學에 홀려들었다가 2008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茶山學園文獻集成』七의 「耽羅職方說券之二」 pp.315-339.에 수록 간행되어 학계에 소개되었다.

수는 상찬계의 실상을 학계에 처음 알렸으며 '모변'을 민란으로 파악하고 향전(鄉戰)으로 재단하는 독창적 시각을 제공하였다.<sup>5)</sup> 그러나 이 소품 만드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다음 글을 소개한다.

"1813년 일어난 양제해 옥사에 대해 《純祖實錄》은 양제해란 인물이 김의강 등과 함께 부역의 무거움을 이유로 역모를 꾸며 반란을 도모하였다 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실로서 실상은 相贊契라는 제주 아전들의 사적인 조직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양제해를 제거하고자 조작해 낸 무고 사건이었다."<sup>6)</sup>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이글의 맷음말 위에 '모변의 추핵일지'와 '찰리사와 목사의 형량비교표'를 배정하였다.)

## 2. 제주관리의 謀變 조작과정과 조정의 추인

### 1) '홍경래난'의 영향

순조 11년(1811) 12월 18일 밤 평안북도 박천 다복동(多福洞)에서 반란의 기치를 치켜든 이른바 홍경래난은 이듬해 4월 17일 정주성이 폭파될 때까지 만 4개월 동안 조선을 진동시킨 민중항쟁이었다. 나흘 뒤 농성 중이었던 어린이와 여성을 제외한 1917명 남정네들 모조리 참수 하였다. 그리고 닷새 후 '관서역적(關西逆賊)'의 평정을 축하하는 당시 13

4) 권인혁,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實狀과 그 性格」, 『耽羅文化』, 제7호(1988. 2), pp.127-151.

5) 박찬식, 「梁濟海의 謀變과 相贊契」, 『耽羅文化』, 제33호(2008. 8), pp.167-197.

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편), 『茶山學園文獻集成』七(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李綱會著作解題」 pp.해제5-해제6.

세 순조의 지시문이 인정전에서 선포되었다. “내가 임금 자리에 오른 뒤부터 더욱 더 그곳 백성들을 돌봐주는 정사에 힘썼으며” 하면서 서두를 장식한 이 글은 반란의 원인을 계속된 흉년에서 찾는가 하면 ‘역적경래’를 “본래 벌레와 같은 미물(賊景來本以蟲之微)”로 치부하고는, 이 미물과 결탁한 향임과 군임을 질타하고 형벌과 표창의 의미를 새기면서 “영원히 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래 사는 복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로 끝을 맺었다.<sup>7)</sup> 반성은 물론 쇄신책도 없는 당시 지배층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불과 두 달 전, 항쟁이 한창일 때 내놓은 임금의 지시문을 보자.

“한번 역적들의 반란이 있은 다음부터 평안도 백성들의 일은 생각만 해도 아득하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를 지경이다.... 나는 덕이 없는데다 멀리 있는 백성들을 잘 돌보아주지 못해 반란을 초래했던 것이다.... 백가지로 생각해도 계책이 전혀 없다.”<sup>8)</sup>

탄식에 무력함 당혹감이 곁들인 참담한 자괴문이다. 불과 두 달 뒤 승리감에 도취된 축하 메시지. 당시 조선 지배층의 정서는 이 양극단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었다. 도취한 승자의 감성 배면에, 난의 재발을 무서워하는 반란의 악령이 숨어 있었다. 이 망령을 일깨운 것이 1813년 음력 10월 3일 제주목사 金守基가 급히 알려온 양제해 ‘모변’(반란음모)의 치계(馳啓)였다. ‘홍경래난’을 진정시킨 지 1년 6개월 13일만의 일이었다.

7) 「純祖實錄」 순조 12년 4월 경오일. 대역죄인을 부를 때 성을 생략하는 것이 관례다.

8) 「純祖實錄」 순조 13년 2월 정미일.

“지금 ‘이 獄情(반역사건의 실정)은 관계가 비상합니다. 여러 죄수의 공초를 보니 단서가 이미 드러났으며, 巨魁 제해는… 우리 강토 안에서 먹고 숨쉬다가 漢池 가운데서 謀變한 자로서 한해 앞서 西賊(關西의 賊 : 홍경래 亂)에 몸을 던져 불을 생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 명색이 장정을 모집하고 군사무기를 제조하고 준비하여 감히 오늘의 變(변란)을 도모하였습니다.”<sup>9)</sup>

이 기록은 18명의 ‘죄수’의 추핵(취조) 내용을 ‘죄수’ 별로 간략하게 나열한 뒤 결론부분의 첫 머리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것이 양제해의 서변투적(西變投賊)설이다.

조정은 경악했다. 제주도에 또 하나의 ‘버려지 같은 미물 경래’가 나타난 줄 알았다. 조정은 보고 받자마자 주저 없이 모변을 그대로 인정해 버렸다. 양제해가 주도했던 30여 명의 등소모의(謀等)를 조정이 군사적 반란모의로 거의 200년간 낙인찍는 순간이었다.

사실 양제해는 관서지역에서 민중항쟁이 한창인 1812년 음력 2월경 장인이자 제주사회에서 인격자로 존경을 받는 김익강(1753~?)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모양이다.

“관서지역에서 변란이 크게 일어난 모냥이우다. 나가 거기에 가그냉 홍경래 편에 들어강 싸우고 싶푸우다.”<sup>10)</sup>

무지막지한 고문 끝에 나온 김의 토설일 가능성성이 큰데, 여기에서 지

9) 「日省錄」 순조 13년 계유 12월 3일. “濟州牧使金守基以謀變罪人梁濟海推覈馳啓”(다음부터는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로 줄여 쓸 예정임) p.409.

10) 「日省錄」 순조 13년 계유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金益剛 問目’

은이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시 제주 사회의 모든 돈줄 각종 이권을 독점하면서 가렵주구하던 상찬계와 후견인 격인 목사의 횡포 아래서, 위의 대화는 제주 백성이면 누구나가 술집에서 사랑방에서 속삭일 수 있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것은 사적 대화가 공적으로 악용되어 한 사회를 빨칵 뒤집어 놓은 — 대화 당시 전혀 예측을 못했다가 훗날 우연한 기회에 사건에 연루되어 한 사회를 빨칵 뒤집어 놓은 — 예측 불가능의 공적 악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즈음 제주 한켠 대정현에서는 通德郎 (종 5품) 具濟國, 儒生 梁渭慶 등 6명이 ‘홍경래의 적을 토멸하기 위해’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을 띠웠다. 이 일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두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는 명예를 누렸다.<sup>11)</sup>

이상 두건을 종합해 보면, 1812년 평안도 민중반란에 관해 제주에서는 공적으로 당당하게 질타하는 양반과 사적으로 숨죽이며 기대하는 백성들 간의 보이지 않는 한냉전선이 형성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 2) 相贊契의 폭력적 조작 : 等訴에서 謀變으로

李綱會(1789~?)는 「相贊契始末」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sup>12)</sup>

“제주라는 곳은 천연의 참호로 안으로 강고한 지역이다. 저 상찬계의 교만하고 사치하고 음탕하고 과다함이 이르는 곳마다 국에 달하여 반드시 크게 넘쳐났으니 西州(關西)의 多福洞이 곧 탐라 고을의 相贊契였다. 대체

11) 고창석, 「(탐라문화학술총서1) 濟州道古文書研究」(제주 :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2001) pp.559-562.

12) 「相贊契始末」, p.315. 제전과 노환에 관해서는 이강희 지음 현행목 옮김, 「耽羅職方說」(제주 : 각, 2008), p.113. 참조

로 보아, 南昌의 리(吏)는 굳이 사실에 가깝게 말하자면 齊田이나 魯桓보다 오히려 더하다는 것이고 그게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는 것 이었다. 제주의 상찬계는 내 큰 걱정거리다.”

이 기록은 1818년 10월경에 쓰여 졌으니까 양제해(1770~1813) 주동의 등소모의로부터 거의 5년 뒤의 분석이다. 상찬계 가렴주구의 강고함, 이것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수탈, 학대, 착취하는 정보가 밖으로 세어나가기 어려워 가렴주구하는데 천험의 요새라는 지리적 조건에, 중국의 고대 폭군들보다 더 포악하다는 인성적 요인이 결부되어 결국 홍경래의 비밀 아지트이자 반란의 근거지, 다복동이 되어 양제해의 등소모의를 유발했다는 것이 이강희의 시각이다. 1794년부터 1812, 1813년 사이 상찬계의 “虐民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백성 살리기 (生民)가 水火보다 급했기에 梁濟海가 等訴를 謀議하기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sup>13)</sup>

相贊契는 어떤 조직이었을까.<sup>14)</sup> 명칭 그대로 ‘같은 부류끼리 모여 결에서 힘을 보텐다’는 이 조직은 1810년 대 초기 鎮撫吏, 鄉吏, 假吏 800여명의 서리 가운데 300여명으로 구성되어 제주의 모든 돈줄 이권줄을 독점하면서 가렴주구를 일삼는 아전단체. 이 수뇌부에는 지모나 권위 아니면 간계가 뛰어난 자들이 포진했다. 40년 전, “吏業이 빙궁하고 피폐하여 미약하기 짹이 없던” 1770년대 “여럿이 함께 부자되자”는 어느 아전의 구호 아래 뭉치기 시작하여 ‘돈을 유일한 신’으로 치부하는 (唯錢是其神) 조선판 천민자본 이랄까 아전자본의 상징으로 제주아전의 황금시대를 구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목사는 무인 金守基였다. 임금을 시위하고 시위군의 부정을 조

13) 「相贊契始末」 pp.324-325.

14) 상찬계와 관해서는 「相贊契始末」 pp.315-326. 박찬식, 앞의 논문 참조, 註5).

사하는 別軍職에 있다가 1812년 음력 6월에 목사로 임명되고 1814년 4월에 파직되었다.<sup>15)</sup> 기세등등했던 김목사도 양제해의 장실로 파직이 예고되고<sup>16)</sup> 이어 昏謬溺職之罪가 추가되어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sup>17)</sup> 상찬계의 전성시대에 목사는 향리들이 ‘높이 모시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이 조직에 저항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제1차는 한사람이, 제2차는 등 소였다.

### ① 제1차, 진무리(鎮撫吏) 李道喆의 저항<sup>18)</sup>

1794년 오랜만에 흉년이 들어 사망자가 속출하자(이때 김만덕의 선행이 시작 될 때임) 軍丁의 기재가 모두 텅빈 장부로 되어 고칠 때, 車興道라는 世族이 가난하여 놈물을 대지 못하고 제주에서는 가장 천한 직역으로 치부되던 牧子 신분으로 강등되었다. 그의 딸이 목동에게 시집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부끄러워 자살하고 말았다. 이를 보고 상찬계의 분쇄를 결심한 진무리 李道喆이란 사람이 1804년 자비로 상경, 備邊司에 상찬계 폐단을 조목조목 알리는 글을 올려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備局은 제주목사에게 형식적인 사실조사를 의뢰, 제백(濟伯)은 오히려 이도철을 무고죄로 다스렸다. 이후 또 1805년, 1806년 두 차례의

15) 「耽羅觀風案」, 「心齋集」 향토자료총서 2(제주:제주문화사, 1990), p.269.

1812년 음력 6월에 김목사가 부임했던 사실은 양제해가 이 신구목사교체 시기(『일성록』에는 5월)를 이용하여 攻城계획을 세웠다는 기록에서 확인된다. 모병실패로 계획은 중지되었다는 것이다. 註 85) 참조

16) 『日省錄』 순조 13년 계유 12월 10일. “全羅監司朴峴壽將罷濟州牧使金守基”

17) 『日省錄』 순조 14년 계유 윤2월 14일 “濟州察理使李在秀將罷牧使金守基” 이 장계로 김목사는 파직되었다.

18) 「相贊契始末」 ‘李道喆傳’ pp.326-328.

상경 호소 역시 ‘미친놈’이란 별명과 함께 재산을 당진하고 말았다.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제주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의 처자는 유리걸식하는 처지로 전락, 결국 그는 상찬계의 돈 유혹에 굴복하여 결국 상찬계의 수뇌부가 되었다.

제주백성 모두가 보복이 무서워 계의 횡포에 ‘함구수설(含口凶舌)’ 할 때, 끝에 타협하긴 했지만, 정의로운 외골수 이도철의 3차례 원소(遠訴) 행위를, 이강희는 한나라 때 명장 이능(李陵)이 ‘오랑캐’에게 투항했던 고사를 인용하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장군의 의지를 높이 쌓던 사마천(司馬遷)의 찬사(盛言)로 대신 했다. 비록 제주섬의 地運 때문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이강희였지만 그에게 큰 희망을 걸면서 높이 평가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 ② 제2차 저항 그리고 조작의 시동<sup>19)</sup>

순조 13년(1813) 10월 그믐날 30여명 남짓한 백성이 제주읍 中面 臣馬村(오늘 제주시 아리2동 걸머리 마을)에 모여들었다. 이 면의 風憲[憲長] 양제해가 공사(公事)를 고지하여 소집한 취회(聚會)였다. 그러나 여

19) 「相贊契始末」, 「梁濟海傳」 pp.324-328.

여기에서 묘사된 고문장면의 핍진감과 리얼리티의 약여함은 조선시대 현장기록의 백미 중 하나라 할 만 하다. 등소모의 소식에 낙심천만하는 상찬계 핵심간부들의 근심어린 단호함이라든가, 아밤에 8백여 나졸과 계원(대원)이 헷불 들고 모여드는 동헌의 일촉즉발 터질 듯 한 분위기에, 농침을 즐기는 목사 김수기와 코골며 자는 장두 양제해의 대비 또한 기가 막히는 장면이다. “物故者(장살당한 사람) 8人, 講者(유배자) 10人, 餘31人 모두석방”(「相贊契始末」, p.333.)은 찰리사 이재수가 보고한 장살자 7명, 유배자 10명, 석방자 35명과 비교할 때 김의강의 정확한 기억력이 돋보인다. 특히 물고자가 1명 많은 것은 이재수의 ‘윤2월14일 치계’ 작성 이후에 杖毒의 여파로 죽은 것이 확실하다. 석방자 수는 정확한 찰리사의 보고에 4명이 적다. 이 모두가 현장에 밀착한 김의강과 필력의 소유자 이강희의 득의의 合作品이다.

기서 오간 얘기를 종합해 보건대, 공사의 告知를 평계로 해서 等訴를 결정하려는 양의 의도적인 소집임이 분명했다. 상찬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奸吏의 民弊’, ‘相贊이 毒民하는 폐단’, 특히 ‘사또도 吏弊를 明察한다는 기대감’, ‘풍현에게 대책의 강구를 촉구하는 내용’ 이었다. 마침내 양제해는 30여명 앞에서 결연히 선언했다.

“奸吏 백성을 위해 한 목숨을 걸겠소.”<sup>20)</sup>

이어 글 잘하는 사람(善文者)이 등장(等狀) 써오는 조건으로, 지도자는 초장에 욕볼지(逢辱)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狀首[狀頭]가 되었다. 등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조처 없이 헤어졌다.

바로 여기까지였다. 백성을 독으로 죽이는(毒民) 상찬계에 대해 여기 저기서 솟은 분노의 자연 발생적 결집으로 등소가 결정된 것이다.

장두 양제해(1770~1813)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제주의 향관(鄉監)을 4번, 察防을 2번 역임)인데다 행세거나 하는 전통적인 世族 출신이었다. 그런데 사람 좋고(好人), 위 아래 없이 똑같이 대접하고(公平), 돈을 밝히지 않으며(廉), 백성을 어여삐 여기니(愛民), 누구나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이는 그 못지않게 빼어난, 장인 김익강이 한 인물평이다. 그러나 “집이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하고 글자를 모른다.”<sup>21)</sup>는 이 구절이야 말로 백성을 위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속에서 함께 뒹구는 장두 양제해의 진면목을 나타낸다.

등소하기로 하고 그냥 헤어진 10월 30일, 밤에 코를 골다가 체포되어 목관아(牧官衙)의 동헌 뜰에 끌어 앉혔다. 그믐날 밤 11시에서 1시 사

20) 「相贊契始末」 p.329.

21) 「相贊契始末」 p.328.

이(三更)였다. 양의 어릴 적 동무 尹光宗이란 자가 그의 상전이자 상찬 계의 핵심 金載儉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이다. 하인의 말을 들은 김은 경악했다. 契隊로 몇 번이나 끌어드리려고 노력했으나 번번이 거절했던 양이 행동에 나선다면 상찬계의 존립에 치명타임을 그는 직감했다. 즉 각 소집된 계의 간부들도 동감이었다. 그들은 발 빠르게 행동했다. 윤광종의 이름으로 ‘告變狀’(‘변란’ 즉 반란을 고발하는 문서)을 작성하여<sup>22)</sup> 목사에게 제출하는 한편, 포졸을 대기시켜 목사로 하여금 체포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동현 뜰에 고문기구도 준비해 놓았다. 이 모두가 10월 30일 밤 11시와 다음날 밤 1시 사이의 일이었다.

한밤 중 얼멸결에 목사 김기수는 동현의 높은 곳에 좌정하여<sup>23)</sup> 상찬계가 작성한 윤종광의 고변장에 따라 추핵(推覈 : 범죄사실을 심문함)을 시작했다. 추핵의 핵심은 등소모의가 아닌 ‘반란모의’ 곧 ‘謀變’임을 자백 받는 일이었다.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감히 謂變하였는가?”

“너는 모변의 원흉인데 모변을 모른다는 것은 사기다.”<sup>24)</sup>

글 모르니 ‘모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당연지사, 모변이 뭐냐고 반문할 때마다 좌우에서 三棱杖과 治盜棍이 다듬이질 하듯 난타하니 양

22) ‘모변’이란 용어는 10월 그믐날 밤 상찬계의 책략기들이 윤광종 이름으로 만든 이 ‘告變狀’에서 처음 나온다. 바로 이 음모가들이 생각해 낸 용어이다.

23) 백성을 주눅들게 만드는 목관아지의 위압적인 전축배치에 관해서는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서울 : humanist, 2005), “관아, 지방정치의 중심지” pp.167-174, 참조 조선시대 사형집행, 형구(삼릉장, 곤장, 치도곤, 주리등) 감옥 등에 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홈페이지→역사속으로→죄와 벌의 사회사→심재우』를 찾아 보시오.

24) 「相贊契始末」 pp.331-332.

의 혼백은 봉! 뜨고 말았다(梁魂已浮矣). 정강이까지 포함하여 당한 곤장의 수가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버린 백여 대. 낮에 모여서 피한 일을 묻는 심문에서 비로서 오늘 등소모의 건이 모반에 관계됨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상찬계의 民弊 때문에 等狀[等訴]하려는 연유를 행각승처럼 앞으로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이야기하려 했을 뿐, 또 상찬계가 毒民하는 연유를 행각승(頭陀僧)처럼 앞으로 마을 한바퀴 돌면서 이야기하려 했을 뿐 이밖에는 죽어도 모의한 게 없소.”<sup>25)</sup>

상찬계의 민폐와 독민(毒民) 때문에 등소(等訴)하려던 일을 토설하고 모변을 극구부인 했다. 할 수 없이 목사는 양을 수감했다. 평소에 양에게서 은혜를 입었던 옥졸이 포승과 칼을 풀어 주었다. 불쌍하기도 했지만 독형(毒刑)으로 살 가망이 없음을 짐작했기 때문이다. 고통에서 해방하려고 깊은 물 자살할 곳을 찾아 나섰으나 그것도 겨울이라 실패하고 감옥 근처에서 잡혀 다시 갇혔다. 그리고 이내 죽었다. 11월 1일 오전 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서 상찬계가 의도한 ‘減口策’<sup>26)</sup>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아예 입막음 하려고 죽여 버리는 전통 수법의 ‘멸구책’— 은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어 그날(11월 1일) 30여명 등소모의 참가자를 조사했으나 별 수환이 없었다. 뒤에는 이 ‘기묘한 탈옥’도 치밀하고 대담한 탈옥으로 각색되어 양제해의 초인성이 강조된다. 양은 이렇게 죽었는데 말이다.

25) 「相贊契始末」 p.332.

26) 「相贊契始末」 p.332.

### 3) 상찬계와 목사의 謀變 각본 완성<sup>27)</sup>

梁憲(風憲 양제해)과 백성의 等訴謀議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찬계나 목사에게는 청천에 날벼락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멸구책'으로 조기에 양제해를 처리했다. 이제 남은 일은 '잔당'을 추핵하여 나온 供招를 역어서, '원흉' 제해가 끝내 거부한 변란음모를 사실이라 조작하는 것이다. 요컨대, 허위자백으로 모면의 각본을 쓰는 일.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모반대역을 하였더라도 원래 자복하지 않고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범인은 모반대역죄의 혐의는 있으나 그 죄를 범한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연좌도 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복을 받기 위해서 범인을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8)</sup> '모반의 원흉'을 이미 죽여 놓았으니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는 순간 목사의 자리가 날아갈 판이었다. (사실 목사는 양제해가 고문 중 11월 16일 옥사했다는 보고로 과직 당하게 된다. 적법한 율형을 시행 할 수 없게 되고 중차대한 반역 사건의 체면에 끼친 소홀함 때문이었다.<sup>29)</sup>) 상찬계보다도 더 다급해진 쪽은 金守基 목사였다. 해서 11월 1일 옥사한 양제해를 16일 까지 '살려놓고' 그 '모변'을 기정사실로 몰아가면서 그 내용도 거창하게 조작하여 조정대신을 반드시 현혹시켜야했다.

11월 7일 윤광종의 진고장(進告狀)이 다시 제백(濟伯)에게 제출되었

27) 이 장은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와 12월 10일 “濟州牧使金守基以謀變罪人梁濟海及干連諸人推覈馳啓”(다음부터는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로 줄여 사용할 예정) 참조.

28)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서울: 경인문화사, 2007), pp.280-281. 모반대역죄인의 아들만은 연좌에 걸린다. 양제해의 아들 日會가 효수 당했다.

29)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全羅監使朴峴壽狀罷濟州牧使金守基”, “究竟巨魁之濟海 遽致徑斃盤覈路絕 當律未施 獄體所在萬萬疎忽 該牧金守基爲先罷黜其罪狀令攸司稟處”

다.<sup>30)</sup> 여기서 진고장이란 바로 밀고장. 이것은 상찬계의 존폐문제에 직결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미 짜여진 이 밀고장의 내용에 따라 범인의 추핵이 진행되고 이 추핵 과정에서, 짜여진 각본에 충실한 자백을 추려 엮어 조정에 보고하게 되면, 이를 보고 조정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상찬계 내 지모가 있고 간특한 간부급이 이 밀고장 작성에 총동원 되었을 터. 말썽의 씨앗 제해를 없애 큰 걱정은 덜었지만 양의 장실소식이 서울에 알려지면 이 또한 상찬계에게나 목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이 될 터. 추핵을 서두르되 일주일 걸려 조작한 각본에 ‘죄인’들이 따라 주리라 자신하면서 추핵준비를 완료했다. 목사에게 ‘진고장’의 제출은 곧 추핵의 시작이었다. 추핵관으로 牧使 김수기, 判官 張持大, 大靜縣監 白師健, 旌義縣監 權就一이 내정 됐다. 이른바 모역사건(獄事)이어서 제주 4관장이 총동원된 유례없는 구성이었다.

이 사건은 크게 봐서 세 번의 추핵과정이 있었다. ‘제1차 추핵’은 10월 그믐과 11월 초하루 사이에 한 것이었고,<sup>31)</sup> ‘제2차 추핵’은 11월 7일에서 9일 사이,<sup>32)</sup> ‘제3차 추핵’은 11월 13일에서 16일 사이에<sup>33)</sup> 한 것이다. 제2차 추핵의 내용을 종합하여 조정에 ‘급히 보고’한 것이 12월 3일 조정에 접수된 ‘濟州牧使金守基以謀變罪人梁濟海推覈馳啓’(이후부터 ‘제1차 목사치계’ 또는 ‘12월 3일 치계’라 줄여 사용)이고, 제3차 추핵 내용을 ‘濟州牧使金守基以謀變罪人梁濟海及干連諸人推覈馳啓’에 담아 12월 10일 접수시켰는데 이를 ‘제2차 목사치계’ 또는 ‘12월 10일 치계’로

30)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p.403.

31) 「相贊契始末」에서 보이는 장두 양제해와 등소모의에 참여했던 30여 명의 추핵을 말한다.

32) 7일은 밀고자 윤종광이 고변장을 제출한 날이고, 9일은 이날 밤에 양제해가 탈옥한 날이다.

33) 13일은 제주읍 봉개리에서 양이 잡힌 날이며, 16일은 죽은 날이다.

약칭할 예정이다.

우선 밀고장에 있는 '반란군'의 제주성 공격 일정과 절차를 보자. 제1차 목사치계에서 추린 것이다.

11월 16일 : 밤 加嶺 숲속에 300명 매복

17일 : 새벽 제주성 남문이 열리면 공격개시, (대정 · 정의읍 동시 공격)

성내 내용세력 동조

포발사, 조총정예병 투입, 화약으로 관아 불지름, 목사 · 판관 살해(두읍 수령 살해)

이 군사작전에서 '반란군 괴수 양제해'의 기상이 고려와 원나라에 대항했던 제주 삼별초의 장수 金通精(?~1273)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  
(상찬계와 목사는 장두 양제해를 김통정에 비유했다. 뒤에서 설명 예정)

제2차 추핵(이 내용은 제1차 목사치계에 있음)에서 저들이 취조한 인물은 죽은 양제해를 포함하여 모변의 핵심이라 추정한 18명이었고 추핵의 주요 내용은 병사 900명의 모집(謀兵), 화약 · 조총 · 환도의 무래(貿來), 삼읍동시거병, 4官長 살해, 제주해상봉쇄, 성사 후 삼읍 관장의 분장(分掌), 양제해 도주설(島主說)과 별국창설설이었다. 여기에 양이 '홍경래난'에 참여를 원했다는 서변투적설(西變投賊說)도 포함된다.

제3차 추핵에서도 심문내용은 같았다. 특이하게도 조선에서 떨어져 나와 제주 별국(別國)을 창설하려는 양제해의 이른바 제주 독립국론이 확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제해 자신이 삼별초 장군 김통정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동시에 탐라시조 '양을라'의 후손론을 악용하는 별국 창설의 논리보강도 뒤따랐다.

조정은 특히 양의 서변투적설에 혼혹되어 상찬계와 목사의 '모변'조

작을 이의없이 찬동하게 된다.

두 차례 보낸 치계에서 산견되는 다음 단어들이 이채롭다. 물론 ‘모변(謀變)’의 다른 용례들이다. 불궤(不軌), 난역(亂逆), 모역(謀逆), 변란(變亂), 흉모(兇謀), 궁흉(窮兇), 환국(換局), 옥사(獄事), 옥정(獄情).

#### 4) 조정의 모변 확정

목사의 첫 급보, 제1차 치계가 조정에 도착한 것이 12월 3일, 그 다음 날 밤에 순조가 읽고, 5일 제주 백성들을 효유하는 ‘諭濟州民人等’의 교서를 내렸다. 유례없이 빠른 조치였다.

“어제 저녁, 제주 목사가 그 섬에서 변란을 모의(謀變)한 죄인을 잡아 신문 조사했다는 장계(狀啓)를 보았는데 말의 의미(言念)와 광경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 어린이처럼 날뛰는 백성이 변란을 꾀한 것(亂民之謀變)은 비록 그들의 사나운 심보가 평민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역시 인심이 깨끗지 못하고 몇몇한 윤리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관에서 재물을 마구 걷어 들이지 않고 백성을 침해하는 정사를 하지 않게 했더라면(官無剝割侵漁之政) 아무리 사나운 성질을 가진 자들이라도 내 백성이 되었을 것인데 어찌 이런 변괴(變怪)가 있게까지 되었는가… 이는 첫째도 조정의 잘못이고 둘째도 조정의 잘못이다.”<sup>34)</sup>

이 교서의 핵심은 섬 백성을 질타하면서 목사의 모변조작을 국가차원에서 주저 없이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는 바로 상찬계의 혐혹 작전이 주효한 것. 그리고 상찬계와 목사는 이 치계의 끝부분에 ‘괴수’의 극적이

34) 「純祖實錄」 순조 13년 12월 정유일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5일 “諭濟州民人等”

며 초인적인 아니 초인의 탈옥 과정을 배치하여 조정의 호기심 섞인 긴장을 유지시켰다. 치밀한 계산이었다. 제1차 치계의 허술한 구성은 11월 9일 밤에(11월 7일 추핵 시작) 탈옥했다가 5일 만에 체포된 괴수 양의 재추핵과정에서 보완되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모변을 유발시킨 목사의 파직도 강력하게 암시하였다. 사실, '양제해의 11월 16일 장살' 책임을 물어 김목사 파직을 품의하는 전라감사 박윤수의 장계가 12월 10일 조정에 접수 되었고<sup>35)</sup> 이듬해 윤2월 19일에는 오직탐관 김목사의 파직을 품처하는 찰리사 이재수의 치계도 조정에 도착했다.<sup>36)</sup> 결국 목사는 음흉한 상찬계의 희생물이었다.

순조의 사후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는 12월 5일 제주민에게 내린 교서와 함께 찰리사 겸 위무사 李在秀의 파견결정으로 이행되었다. 이제 모변의 사후 처리는 察理使 이재수의 손에 달렸다. 과연 이재수는 공정한 관리였을까.

### 5) 찰리사의 모변과 등소 동시인정<sup>37)</sup>

이재수는 임금의 지시와 관례에 따른 備邊司의 천거로 결정되었다. 정사품 응교(應敎) 이재수를 특별 진급시켜 (特加一資) 정삼품 察理使 겸 慰撫使로 임명[差下]하였다.<sup>38)</sup> 홍문관(弘文館)의 정4품 벼슬을 두 단계 높인 파격이었는데 목사가 정삼품이었기 때문이다. 찰리사에게 부여한 임무는 네 가지였다. 목사와 함께 추핵완료, 문무과거 시험실시,

35)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全羅監司朴崙壽狀罷濟州牧使金守基”

36)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濟州察理使李在秀狀罷牧使金守基”

37) 이 장은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濟州察理使李在秀以罪囚等分輕重酌處馳啓”(다음부터는 “李在秀以分重馳啓”로 줄여 쓸 예정임.)에서 추려 썼다.

38)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5일. “命應敎李在秀加資濟州察理使差下”

수령과 진장(鎮將)의 탐학불법조사, 고을의 많은 인재등용.<sup>39)</sup>

순조 14년(1814) 2월 13일, 찰리사가 제주에 도착하였다.<sup>40)</sup> 임명 받은 12월 5일부터 따지면 68일 만이요, 양제해가 옥사한지(11월 1일) 101일 만의 늄장도착이었다. 상찬계와 목사에게는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충분한 시간을 벌수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지옥의 연장이었을 터.

뜻밖에 이재수는 실망이 커던 백성들에게 기대 이상이었다. 제주에 도착하기 전부터 찰리사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었다. “죄인을 편안하게 보호하라.”<sup>41)</sup> 전주에 도착한 찰리사의 이 명령이 제주에 먼저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섬을 옥죄던 고문 공포의 분위기가 싹 가셨다. 모변의 기본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핵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고, 두드러지게 부패한 일부 향임과 군임을 엄격하게 처벌했으며, 잘못된 호적을 대부분 바로 잡아주었다.<sup>42)</sup> 도착한지 한 달 만에 결정한 목사 김기수의 파직<sup>43)</sup>과 훨씬 뒤의 일이지만 대정 수령 權就一의 파직<sup>44)</sup>도 섬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일의 본질을 페뚫어 처리하는 게 귀신같아 백성들이 그를 일러 하늘이 내린 신선”이라했다. (“知事如鬼 民謂之天仙下降”)<sup>45)</sup>

그러나 상찬계조직의 추핵은 실패했다. 찰리사의 늄장 도착에 따른 조직적인 대책 때문이었다. 멸구책(滅口策)<sup>46)</sup>으로 양제해를 죽였듯이

39)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5일. “命濟州按覈使差送”

40)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李在秀以分重馳啓” 첫 문장에 나옴.

41) 「相贊契始末」, p.337.

42) 「相贊契始末」 “李察理傳”

43) 註35)

44) 「日省錄」 순조 14년 3월 5일. “濟州察理使李在秀狀罷旌義縣監權就一”

45) 「相贊契始末」, p.338.

함구수설책(含口囚舌策)<sup>47)</sup>으로 섬 백성을 모두 벙어리로 만들었다. 곧 며날 찰리사를 생각하면, 그 때 판을 칠 상찬계의 보복에 '누가 배겨 날까'였다. 전주 명령으로 72일 만에 죽을 고비를 넘긴 김익강이 흘로 도왔다. 유일한 협조자 김익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재수는 "상찬계가 있는 고을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으니 내 마땅히 부셔버릴 것이다."하고 호언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으나 시작부터 어긋나고 말았다. 고용하는 조사관마다 계원이었고 조사대상자도 모두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sup>48)</sup>

모변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知事如鬼'라던 찰리사(察理使)였는데, 그의 양제해 옥사의 처리는 의외로 빠르고 수월했다. 신출내기 정삼품 찰리사로서 이미 결정한 원로 조정대신의 '모반확정'에 이의를 댈 처지가 못 된 데다가 공동조사관으로 지명된 목사 김기수가, 전라감사 박윤수의 파직요청으로<sup>49)</sup> 중간 탈락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찬계도 조직적으로 방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거의 반병신이 되어버린 47명의 '죄수'들도<sup>50)</sup> 공포가 가신 동현 뜰에서 추핵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도착 한 달 만인 윤 2월 14일 '양제해 모변'에 관한 찰리

46) 「相贊契始末」 p.332.

47) 「相贊契始末」 p.326.

48) 「相贊契始末」 p.325.

49) 註29) 괴수 양제해가 장살 옥사 당했기에 전라감사가 파직을 요청한 것이다.

50)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9일. "命濟州罪人高德好梁日會等梟首警衆次律以下  
依查啓施行發告人尹光宗本島邊將除授". 찰리사가 추핵한 죄인은 모두 47명인데  
(일률 2, 무기한 섬유배 4, 유한 섬유배 6 보석 석방 10, 완전 석방 25), 여기에 '不問'  
에 불인 '죄수'와 기타를 포함하면 찰리사는 64명을 조사했다. 물론 양을 포함한 杖  
殺者 7명은 제외된다. 목사는 장살자 7명을 포함해서 모두 71명을 추핵했다. '죄인'  
모두에 대한 찰리사와 목사의 형량 비교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이 글 맨 뒤의 도표  
참조

사 이재수의 종합보고서가 조정에 접수되었다.

⑦ 모변죄인 양제해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모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제해 와 다른 죄수들 중에 전후하여 죽은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이번 옥사(獄事)로 밀하면 제해는 섬 안의 품관(品官)으로 동지 4, 5인과 결탁하여 삼읍(三邑)의 수령을 모해하려 하였으며 심지어 배를 뒤집어 업고 재물을 빼앗고 육지와 왕래를 끊어버리려는 생각까지 품었으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인하여 무리를 만든 다음 일제히 모이는 것을 가택해서 등소(等訴)하고(托齊會而等訴) 계를 만들(作契)면서 서로 돋는다고 하였습니다.<sup>51)</sup>

㉡ 그들이 도리에 어그러진 말을 꺼내면 꾸짖으면서 배척한 사람도 간혹 있었지만, 심지어 어리석은 무리들로서 그 등소(等訴)와 작계(作契)를 좋은 의도로 여긴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자들까지 다 같이 그릇된 공초(誤招) 때문에 많이 불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경중을 잘 헤아려 살핀 다음 사형(一律)에 처하고 섬에 귀양(島配)보내며 석방하는 등급을 나누어 구별하였습니다.<sup>52)</sup>

㉢ 결과 고덕호(高德好)는 이미 군사를 일으켜 성을 공격하려는 흉악한 음모에 가담 한 것으로 공초하였고 양일회(梁日會)는 제해의 아들로서 제주를 공격하여 합락시키려는 음모를 세밀하게 꾸몄으므로 모두 사형에 처하여야 할 것입니다.<sup>53)</sup>

㉠과 ㉡은 이어진 문장이다. ㉡ 다음에는 47명의 형량과 이에 대한

51) 「純祖實錄」 순조 14년 윤2월 병자일,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李在秀分重馳啓” “동지 4, 5인과 결탁하여”에서 ‘4, 5인’이 「純祖實錄」에는 없다. 4, 5인은 효수당한 高德好, 무기한 외딴 섬에 유배된 姜必方 梁仁福 金益剛 金昌瑞를 이른다. 모변의 이른바 핵심지도부다. 밀고자 유풍종이 주장한 15명과 차가 크다.

52) 「純祖實錄」 순조 14년 윤2월 병자일

53)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察理使李在秀分重馳啓”

간단한 설명이 이어진다. 그 첫 대목이 ⑤의 고덕호와 양제해의 아들 양일희다.

⑦과 ⑧을 통해서 보듯이, 찰리사 이재수는 분명 목사 김기수의 모변설을 그대로 복사하였다. 심지어 김의강이 꾸짖었다는 梁제해의 속마음 “을나 후손으로 섬주인임을 자칭하였다”(“自稱乙那後孫 島中主人”)<sup>54)</sup> 까지 인정하여 목사가 조작한 양의 별국창설론에도 동조하는 인상을 풍겼다. 그래도 이재수는 김기수와 달랐다. 놀랍게도 등소를 인정한 것이다.

⑦과 ⑧에 나오는 등소와 작계(作契)에 주의하자. 목사 치계에서는 거의 무시되었던 ‘등소’였다. 도착하자마자 제주 현지에서는 부동의 사실인 양의 초고속 장살과 그 전날의 그 ‘등소’와 장두에 풍헌 양제해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⑦에 기록한 ‘托齊會而等訴’와 ‘작계’가 그 증거다.

지은이의 관심은 계모임을 만들었다는 ‘作契’에도 쏠린다. 등소모임 논의의 애초 시작이 부모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묘 터에서 서로 돋는 장지 작계에서 비롯되었다.<sup>55)</sup> 뿐만 아니라 모병하여 거사하는 것도 작계에서 시작했다는 공초가 보이며<sup>56)</sup>, 등소와 작계의 또 다른 긴밀한 관계가 다음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처음에(제해가) 設契한다고 해서 마음을 허락하여 참가하였으나 等狀 [等訴]한다는 논의가 생겨서 사양하였습니다. 나이가 들고해서.”<sup>57)</sup>

54)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察理使李在秀分重馳啓”, ‘金益剛則’

55)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김목사의 총결 부분. “양정엽 김신강 전필록 등이… 古人の 募兵術을 몰래 취했는데 그것은 대체로 裹葬에서 요역할 때 ‘作契’하기로 중요하게 결정하여 같은 무리(同黨)로 몰래 점지 하는 것이다.”

56)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儒生田必祿 問目’

‘죄인’ 중에서는 최고의 관직인 萬戶 출신 송의대 노인이 이재수 앞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목사에게서 한때 치계의 주모자로 몰리기도 했다. 이런 자백들을 기초로 해서 이재수는 등소도 인정하고 모변도 인정하는 이중의 태도를 취하였다. 요컨대, 찰리사의 치계는 등소하면서 즉각 반란으로 전환하는 반란모의를 추진했다는 내용 보고였다.

“제해가 ‘사람 모아 등소(募人等訴)하면 섬사람이 편해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극도로 자기변명을 하고는 있으나 그는 곁으로 等訴를 내걸고 안으로 犯官을 품었습니다(外托等訴內懷犯官).”<sup>58)</sup>

공포 분위기가 사라진 찰리사 주재의 추핵과정에서 旗牌 金殷寶가 자백한 내용이다. 10월 그믐의 취회가 등소였음을 분명하게 밝힌 공초였다. 이른바 죄인들도 범관을 부인하는 것은 넘어 설 수 없는 한계선. ‘범관’은 관이를 침범하는 반란아닌가. 찰리사 이재수가 고민하면서 등소와 모변을 동시에 인정한 것은 바로 여기서 차용한 것이다. 즉 ‘外托等訴 内懷犯官’을 양제해의 속내(包藏之心)로 파악한 것이다. 이는 등소모의를 아예 배제하고 등소모의 자체를 반란모의로 둔갑시킨 상찬계·목사와 확연히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상찬계의 해체는 실패했지만 “상찬계가 賦役을 남징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필연적으로 쌓여 그 폐가 고질이 되고는 마침내 전에 없는 변괴(無前之變怪)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삼가 사실을 꼭 상세하게 수집하여 추후로 조정에 보고 할 계획입니다.”<sup>59)</sup> 치계 말미에

57)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察理使李在秀分重駢啓”, ‘宋益大則’

58)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察理使李在秀分重駢啓”, ‘金殷寶則’

최종 결론이다. 상찬계의 전성시대가 갔다는 선고였다.

뿐만 아니라 이재수는 섬을 떠날 때 즈음해서 제주, 정의, 대정의 大小民人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효유했다.

“제해는 본래 역적이 아니다. 왜 그의 성(姓)을 제거하는가. 大民은 성을  
붙여 불러주며 小民은 梁憲(양제해 풍현)이라 칭하고 號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sup>60)</sup>

‘모변설’ 추종에서 오는 마음의 고통을, 등소도 인정하고 양제해도 역  
적에서 제주세족과 풍헌으로 복원시키어, 조금이라도 완화해보려는 조  
선시대 양심적인 관료의 한 측면을 이 장면에서 엿 볼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이재수는 죄인의 형량을 정하는데서 역시 큰 시각차를 드  
러냈다. 석방자를 놓고 볼 때 김기수는 40명(형량을 정할 수 없는 장살  
자 7명은 제외된 숫자)<sup>61)</sup> 가운데 정상을 참작한다는 조건으로 5명, 이  
재수는 47명<sup>62)</sup> 중 35명이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모변’의 지도부를 김  
기수와 상찬계는 34명으로 이재수는 12명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제해  
의 장인 김익강을, 목사는 양제해 다음가는 주모자로(김은 양의 同身異  
形이고 둘이 우두머리가 되어 모역을 추진)<sup>63)</sup> 몰고 갔는데 반해 찰리사  
는 여기서 한 급 낮은 수뇌부 5명(사형자 고덕호, 무기한 섬유배자 강필

59)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察理使李在秀分重馳啓”

60) 「相贊契始末」, “李察理傳”, 註7) 참조

61) 40명, 이 숫자는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에서 헤아린 것이다. 맷음말 뒤에  
첨부된 도표 참조

62) 47명 이 숫자는 「日省錄」 “命濟州罪人高德好梁日會等梟首警衆次律以下依查啓  
施行發告人尹光宗本島邊將除授”의 첫 문장에 있다.

63)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金益剛更推  
問目’

방·양인복·김창서·김의강)의 하나로 파악하여 목숨을 살렸다.(‘죄인’의 형량과 그 혐의 내용은 끝에 있는 도표를 참조)

### 3. 모변 조작의 몇 가지 사례들

#### 1) 군사력의 허상

##### ① 모병규모의 황당한 날조

거병범관(舉兵犯官)으로 상정되는 양제해의 군사반란이 성공은 둘째 치고 일어나기라도 하기 위해서는 병력과 무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어릴 적 동네친구 양제해에게서, 모집한 병사(모병) 규모를 직접 들었다는 밀고자 윤향종은 11월 7일 그 명의의 고변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제 정말 장정 9백 여 명을 모집하였네. 3백 명은 주성(州城)으로 나누어 보내고 3백 명은 정의로, 3백 명은 대정으로 보낼걸세. 아직 충원 못 한 그 수가 4, 5십 명인데… 자네도 십여 명 모집 할 수 있겠는가”<sup>64)</sup>

9백 명이 3백 명 씩 나눠 11월 17일 삼읍을 동시 공격, 해당 읍의 관장(官長)과 판관을 살해하여 마침내 ‘도주’(島主)가 된다는 양제해의 야심찬 이 계획은 ‘떼 지어 관으로 가서 연명으로 하소연하는 비폭력 등소운동’이 아니라 9백 명이 야반 공격을 감행하는 군사 반란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거사했다면 과연 이 병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

64)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p.403.

당시 제주 섬에 주둔 병력은 5천 2백 명으로 추정된다. 기병인 마대(馬隊)가 제주성에 896명, 두읍에 각각 262명 씩이고, 예비군이라 할 속오군(東伍軍)이 제주에 2760명, 정의에 600명, 대정에 240명이며, 섬의 사령관 격인 牧使이자 兵使의 정예 수행병 180명도 포함된다.<sup>65)</sup>

모병 9백 명은 사실인가? 목사의 제2차 추핵(11월 7일~9일)에서 핵심추궁은 모병의 규모파악이었다. 대정의 모병부터 보자. 高德好(천종 또는 아전의 하나인 將校였다고도 함. 사형당한 핵심, 제주 목사설도 있었음.)는 “대정읍 모군설은 처음부터 없었다(初無其事).”<sup>66)</sup> 白仁好(양제해가 돌보는 어리고 우매함) “천만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千萬曖昧).”고 공초했다.<sup>67)</sup> 정의 모병설에 관해서도 梁仁福(제해와 가장 친함, 무기한 유배형)은 “천만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sup>68)</sup>, 姜成三은 “처음부터 정의에 왕래한 사실이 없습니다.”<sup>69)</sup> 姜成玉(강성삼의 형제)도 “(좌우의 모병을)처음부터 몰랐습니다.”고 자백했다.<sup>70)</sup> 형구의 폭력 속에서 나온 공초들이었다. 白光賢(고덕호의 사위)은 제2차 추핵(11월 13일~16일)에서 대정모군설을 모른다 하였다.<sup>71)</sup> 제2차 추핵 때 대정읍 동성리에 있는 김 별감집에 양의 편지를 전했다는 백인호의 자백도 제3

65) 조성윤 외 7명, 「19세기 濟州社會研究」,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서울:일지사, 1997), pp.42-52.

66)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高德好問目’

67)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白仁好問目’

68)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梁仁福問目’

69)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姜成三問目’

70)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姜成玉問目’

71)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濟州牧使金守基以罪人白光賢等供招馳啓”. 이 차례는 제1차 차례에서 빠진 두 명, 즉 고덕호의 사위 백광현과 牧校(목관이將校)이자 점쟁이인 韓宗孝가 양제해의 운수를 봐주다 고생한 경우다. 둘 다 이재수가 무혐의 처리했다.

차 추핵에서 김 별감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저들의 한 가닥 기대를 꺽기도 했다. 이것도 백치인데다 양제해가 돌보는 白仁好가 당한 고문 결과였다.<sup>72)</sup> 두 읍의 모병설 그리고 제주를 포함한 세 읍의 동시 거병설도 목사와 상찬계는 입증할 수 없었다. 저들의 각본이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주성 공격인데 여기에 필요한 병력 파악에 온 혈안이 집중되었다. 다행히도 씨름꾼으로 힘이 장사였던 文彭年(양의 아들 일희가 都元帥로 추대함 뒤에 거짓으로 판명됨)에게서 9월 5일 양제해의 70명 모병설이 나왔으나 이것으로 끝나버렸고<sup>73)</sup> 열흘 뒤에 나온 모병 백명설에 묻히고 말았다.

㉠ “9월 15일 제해가 말하길 ‘우리의 大事が 급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高德好가 20명, 高元昌이 50명, 姜必方이 20명을 모군하며 내 첨의 남동생 형제와 田必錄 梁仁福 또한 모군해야 거사할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도 동참 하셔야죠.’”<sup>74)</sup>

㉡ “今月 초(11월 초) 고덕호가 이르기를 ‘募軍 백 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주읍) 中佐面 25명은 姜必方이 謀得하고 25명은 내가 모득하며 中右面 50명은 제해가 모득하여 이달 17일 남문 밖에 모여서 밤에 성으로 돌입하여 大變을 일으킨다.”<sup>75)</sup>

㉢ “10월 간에도 제해는 이르기를 ‘지금 모병한 약속이 백 여 명이나 된다.’”<sup>76)</sup>

72) 「日省錄」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白仁好更推問目’

73) 「日省錄」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文彭年問目’

74) 「日省錄」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金益剛問目’

75)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濟州牧使金守基以罪人白光賢等供招馳啓”

76) 「日省錄」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儒生金五榮問目’

⑦은 제1차 추핵(11월 7일~9일) 때의 것이고, ⑧은 제2차 추핵(11월 13일~16일) 때이다. ⑦은 18명 가운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김익강 심문 때여서 2차 추핵 시 본격적으로 백명설을 조사하게 되었다. ⑧에서 나온 백명설의 시점이 11월 초 임을 감안할 때 (거사 날자가 17일), 초까지도 백명 모군이 불가능했음을 드러낸다.

다음 대화는 죽은 양제해(「상찬계시말」에 따르면)와 모변의 또 다른 핵심 고덕호(사형 당함)<sup>77)</sup>의 면질추핵[대질신문] 내용이다.

“덕호 曰 ‘20인 모병설은 무고하여 덧씌워 속이는 것이다.’

제해 曰 ‘어찌 감히 속이고 피하는가.’

덕호 曰 ‘당초에 너는 10여 명을 모집해달라 요청했는데 그때 募人하기 가 정말 어려워서(實難)하여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너는 왜 거짓 자백 하는가.’”<sup>78)</sup>

牧吏 高元昌(一律, 무기한 섬 유배에 이은 3번째 중형인 유기한 섬 유배 됨)도 면질추핵에서 ‘생판 거짓 자백’(白地誣招)라 했고<sup>79)</sup> 美必方(무기한 섬 유배)도 “애초부터 없었던 일”이라 하여<sup>80)</sup> 양의 면전에서

77) 高德好는 千摶 또는 一校(목관아의 將校)로 나온다. 살아서 죽은 양제해를 대신 한 비운의 인물이다. 거사 성공 후 그의 아버지 대정수령, 그의 아들에게는 禮房碑將에 내정설이 있었다. 11월 16일 밤 가령에 배복, 17일 새벽 제주성공격 등 작전일정이 그의 입을 통해 나올 정도로 모변의 핵심인물이다. 두 핵심 양제해, 김익강 뒤를 이은 그 인물로 상찬계와 목사는 못질하였다. 상찬계와 목사는 김익강을 모변의 2인자로 몰았고, 이재수는 고덕호로 추정하였다. 결국 고덕호는 효수 당했고 김익강은 '絕島無限島配'로 흑산도에 유배당했다. (김이 살인적인 72일 간의 감옥생활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모, 수직장교인 옥리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평소 흡모하여 동정했기 때문이다. 찰리사 이재수는 물론 흑산도에서 만난 이강희도 김을 통해 흑산도에서 유해하던 제주인 멸시관을 높이 평가했다.)

78) 「日省錄」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高德好更推問目’

79) 「日省錄」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高元昌更推問目’

백명설을 부인했다. 더욱이 50명 모병설에 휘둘린 고원창은 10월 20일 이후 언젠가 “지금 모자란 것은 오직 장정이다.”는 제해의 말을 듣고 그는 단언했다. “결과로 볼 때 모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sup>81)</sup> “지금까지 모인하기가 정말 어려워 이 지경에 이르렀다(今募人實難到此).”<sup>82)</sup>는 고덕호의 탄식이다. 결국 “제해가 모집하여 얻은 백 명으로 택일(擇日)하여 입성(入城) 하겠다.”<sup>83)</sup>는 계획도 양제해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목사와 상찬계의 짓거리였다. 저들은 결국 양에게서 들었다는 백명 모병설이 실제인양 보고했으나 그것도 허수였다. 저들은 제2차 치계에서 “모군을 약속(募軍爲約)한 아무개, 아무개….”라 명기하여 상찬계와 목사가, 군사를 모집했다는 실적의 설(募軍說)을 ‘모군 약속’으로 후퇴하여 전자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찰리사 이재수도 모병의 구체적 사례가 결여된 이 ‘모군위약’을 그대로 그의 최종보고서에 받아들였다. 어쩔 수 없이 ‘모변’을 인정 할 수밖에 없었던 그로서는 ‘모변위약’으로라도 ‘모병설’을 지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9백 명은 사라졌다. 모병과 무기구입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과 거의 반병신 된 70명<sup>84)</sup>의 선연한 핏자국만을 동헌 뜰에 남긴채.

9백 명이 백 명으로 축소되고 그것도 허수였다. 30여 명의 등소모의를 반란모의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저들은 터무니없는 숫자놀음을 꾸몄다 지워버리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번에는 ‘모병’ 그 자체가 허구였음을 밝히는 또 다른 자료. 1812년

80) 「日省錄」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姜必方更推問目’

81) 「日省錄」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牧吏高元昌更推問目’,  
“今所乏者惟是壯丁 如何募幾許名云 故渠 雖聞其言 果無募軍之事云”

82) 註178)

83)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濟州牧使金守基以罪人白光賢等供招馳啓”

84) 맷음말에 이어 불인 ‘찰리사와 목사의 형량비교표’ 참조

음력 5월 제주목사의 신구 교체시기에 '舉兵犯官'할 계획을 세웠는데 모병을 실패했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것이다.<sup>85)</sup> 바로 이때부터 모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1813년 11월 16일 '거병범관' 계획에서 1년 6개월 전의 일이었다. 여기에 더해 '거병범관'설을 전면 부정한 이강희의 글을 보자.

"이러한 여러 사실을 미루어 추측하건대, 攻城殺吏의 說은 모두 상찬계 가 정신을 집중해서 만든 것이다."<sup>86)</sup>

추측컨대, 백 명은 10월 그믐날 등소취회에 오라 서로 통지했던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었을까. 이와 같이 근거없는 숫자놀이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제2차 치계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큰 소리 쳤다.

"이제 巨魁는 이미 죽어 없으며 소굴은 타파되고 餘黨도 각자 흩어졌습니다. 만약 모집한 병사 몇 백명 정도가 치밀한 추핵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섬에서 반드시 소요(騷擾)를 일으켰을 것입니다."<sup>87)</sup>

## ② 화약·조총·철편 구입의 허실

조총은 정예병에게 지급될 공격용 무기이고, 화약은 목관아지 건물을 불 지르는데 쓰이며, 철채찍인 철편(鐵鞭)은 관장 암살용이다.<sup>88)</sup>

85)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梁濟海更問目’ “果於前年(1812)五月 乘其舊營門遁歸之時 將欲舉兵攻取 而因募軍之未充 設計未遂”

86) 「상찬계시말」 p.334. “惟此諸事 攻城殺吏之說 皆相贊契 游神之爲也”

87)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말미.

88) 제주‘모변’을 염두에 두고 그 각 무기의 용처를 알린 것이다. 조총 화약 철편과 기타

무기구입도, 모병설의 전철을 밟았을까? 두 차례 목사 치계에 나오는 무기 관련의 대표적인 기록을 우선 보자.

① “너는 이미 鄉所(좌수) 경력에 風憲을 지냈는데 어리석은 백성과는 달리 어떤 심보였기에 무뢰배와 결탁하고 계획을 추진하여 일을 배치하고 포진하는데 난역(亂逆) 아닌 것이 없구나. 화약 조총 철편(鐵鞭) 등 기계(機械)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없고 굳세며 용맹한 장정, 잘 쓰는 포수(善放砲手)를 동서에서 모집하여 공격할 날을 잡았으니 이는 군사를 일으킬 계획이지.”<sup>89)</sup>

이 기록은 윤광종이 양제해에게서 들었던 것을 양제해에게 질문한 것. 이에 대해 ‘이미 죽은 양’은 “不軌(반역)함을 속에 품은 지 오래 되었다.”는 답으로 화약 조총 철편 등 기계의 준비를 시인했다.<sup>90)</sup>

“제주아문 지척에 사는 牧校 李愛昌, 畿吏 梁時彥이 결탁하여 내용하고 관가의 동정을 주야로 엿본 뒤에 善放砲手가 죽음을 무릅쓰는 동안 정예 병력이 기습 출격하여 불 지르고 탄환을 쏘면서 감영과 목관아지를 불의에 습격하여 탈취한다.”<sup>91)</sup>

‘선방포수’는 포를 잘 쓰는 포수를 이름이니 이미 포와 화약이 준비됐다는 것이고, ‘탄환’은 조총을 말하며, ‘불 놓고 탄환 쏜다(縱火彈丸)’에서 ‘火’는 건물을 불 지르는데 화약이 필수임을 의미한다.<sup>92)</sup> 원거리 포

무기에 관해서는 한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서울:가림기획, 2004)이 좋다.

89)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梁濟海問目’

90)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梁濟海問目’

91)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p.426.

92)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姜先貴問目’,

격지원으로 조총 정예대가 투입, 내용자의 인도로 목관아지 건물에 불 지르면서 동헌 점령 그리고 목사의 체포와 살상. 손에 잡힐 듯 박진감 넘치는 이 보고서. 바로 이것의 일주일 전 치계에서는 영 딴판으로 초라 한 형상이었다.

“기계 즉 조총 잘 쏘는 자가 30여 명 되고 각자 조총, 환도를 가지고 있으며, 기계를 찾아서 얻은 것이 20여 개로 기계 적은 것이 가탄스럽다.”<sup>93)</sup>

확보된 조총이 20여개에 불과하다는 양제해의 한탄이다. 큰 몽동이 '한개(蒙同大杖 一箇)면 일당백'의 반란군 기개인데 뭐가 걱정이냐고 능청떠는 윤종광의 이 대화 날짜는 주성 공격일에서 꼭 한 달 전 10월 16일 아니면 17일이었다.

무기구입에 관해서는 세 명에게 그 혐의가 씌워졌다. 가리(假吏)이면서<sup>94)</sup> 무역업자로 추정되는 김광정(金光鼎, 칠리사가 무협의로 특별 석방시킴)은 육지로부터 화약과 철편을 구입해오는 무래설(貿來說)로 고초를 겪었고, 대장간 장인(治匠)인 姜先貴(칠리사가 보석석방 시킴)는 철편제작설로 고통을 받았으며 군기서원(軍器書員) 高成太는 화약 공급설로 끝내 장살(杖殺) 당했다.

김광정은 모변의 핵심인 고덕호의 추핵에서 이름이 나왔다. “화약과

“火藥將用何處 答曰舉事之際 必欲縱火於衙舍”

93)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p.404.

94) '가리'는 假鄉吏의 약자다. 가짜 향리라는 멀시어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향리들의 流亡과 軍功을 통한 신분상승으로 이 지역을 기피하게 되자 비향리층에서 대거 몰려 들었다. 관노 사노도 한몫 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전국 읍 단위에 1/3 또는 반이 나 차지하면서 아전층의 강자로 등장하게 된다. 권기중, '17세기 가리층의 형성배경과 그 존재 양태 —단성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28호(1998. 6) 참조. 제주에서도 이 당시 鎮撫吏 鄉吏와 함께 三班에 들 정도였다. 그러나 실상은 안개속.

철환(鐵丸)을 貿來次 邑中 김광정으로 하여금 출육하게하여 금명간 꼭 돌아올 것이다.”<sup>95)</sup>는 고덕호의 말이 추핵관(목사 김기수, 판관 장지대, 대정현감 백사건, 정의현감 권취일)들을 만족 시켰다. 이 추핵일은 11월 7일에서 9일 사이였다. 그러나 김은 8월 3일 제주를 출발하여, 가령에 매복했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공격하기로 한 11월 16일에 도착했다. 뿐만 아니라 뱃짐에 화약 한점, 철편 한개도 없었던 점을 들어 그는 高의 공초가 “천만번 생각해도 맥랑하다.”하였다.<sup>96)</sup> 1차 때는 5대였으나 2차 때는 20대의 과도한 매질 속에서도 굽히지 않은 대답이었다.<sup>97)</sup> 결국 이 재수는 그를 무혐의로 ‘특별 석방’시키면서 조리 있는 그의 답변을 높이 평가했다.<sup>98)</sup>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장실대상 1호였던 그가 살아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무기를 담당하는 아전(軍器書員) 조성태의 죽음이 그를 살린 것일까. 아니면 무역해서 벌은 돈 때문이었을까.

고성태는 10월에 사냥 가는 양제해가 요청한 화약 한 근이 빌미가 되어서<sup>99)</sup> 화약, 조총, 활·화살의 공급책으로 낙인찍혔고<sup>100)</sup> 끝내 11월 22일 장살 당하는 참극의 당사자이기도 했다.<sup>101)</sup> 고 역시 양과 대질 심문

95) 『日省錄』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高德好問目’과 ‘罪人姜成圭問目’

96) 『日省錄』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假吏金光鼎問目’과 ‘罪人金光鼎更推問目’

97) 『日省錄』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假吏金光鼎問目’과 ‘罪人金光鼎更推問目’

98)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察理使李在秀分重馳啓”, ‘金光鼎則’

99) 『日省錄』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軍器書員高成太問目’

100) 『日省錄』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高成太更推問目’

101)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濟州牧使金守基以罪人濟海等徑斃馳啓”

매 맞아 죽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폐(斃)다. 徑은 이르다는 뜻. 양제해 11월 16일, 양시언 11월 19일, 고성태 11월 22일, 김신강 11월 24일, 전필록 11월 27일 ‘경폐’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2명의 이름은 불명이다. 고성태의 경우 병으로 죽었다 보고하고는 뒤에 인장경폐(因杖徑斃)로 수정보고 했다. 이 날자들도 믿을 수 있을

에서 “화가 벌겋게 난 상대편에게 생판 무고한다(赤面相對 白地誣告).” 고 했다.<sup>102)</sup> 혹여 죽은 사람끼리의 면질추핵이 아니었을까.

姜先貴, 철을 다루는 야장(冶匠)은 세 읍의 관장을 살해할 목적으로 철편 2개의 제조를 주문 받았고, 11월 3일에는 별도리 金光集의 집에서 철편의 급한 제조를 요청받기도 했다.<sup>103)</sup> 그러나 찰리사는 “관을 침범한다는 말을 듣고도 거절하지 않았으나 고덕호의 요청을 따른 혼적이 없다.”고 판단, 보방(保放)에 처하였다.<sup>104)</sup> 철편제조는 없었다.

철편 조총 화약 포로 무장한 300명의 제주성 공격 드라마는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 각종 무기의 물증도 못했다. 아니 애초부터 없는 물증이었다. 혹여 몽동이(蒙同)라면 몰라도

이 장을 마치면서 꼭 얹어야 할 덧 말 하나, 무기구입에 막대한 자금은 필수. 양제해는 글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 2) '作別國說'의 실체

반란의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반란군 지도자들 초미의 관심은 광범하게 산재한 백성을 반란대열에 흡수시킬 동원의 신념체계 창출 아니면 기존 신념의 차용에 집중된다. 이것도 아니면 기존 신념의 변용이라도 시도한다. 예컨대, 조선 후기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냉긴 몇 가지 사례들, 모진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머나 먼 해도(海島)로부터 鄭真人이 출

---

까. 전필록 사망일이 마지막인 11월 27일, 이 치계 도착날이 12월 10일, 그러니까 치계가 제주에서 서울까지 13일 정도 걸린다고 봐도 될까.(『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察理使李在秀分重馳啓” p.574.)

102) 『日省錄』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高成太更推問目’

103) 『日省錄』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姜先貴問目’

104)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察理使李在秀分重馳啓”, ‘姜先貴則’

현하여 새 나라를 만들려 온다든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하강한 미륵불이 평등사회를 세운다는 것들이다. 『홍길동전』에 보이는 율도국도 그 예이다. 반란에 앞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퍼트리는 희망의 ‘소문’들이다.

이것을, ‘난리’가 터질 때마다 지배층이 전전긍긍하면서 일소해버리는 상투어가 있다. ‘무지렁이 백성들의 유언비어다.’고. 또 있다. ‘요언(妖言)이고 망설(妄說)이라는 것. 제주 지배층은 이 요망한 말과 이야기를 역으로 악용하여 양제해가 자백했다는 ‘作別國說’과 ‘반란장수 金通精비유’로 거창하게 윤색했다.

그 과정을 보자. 조선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나라(別國), 그러니까 독립국을 제주에 세운다는 이 설은 11월 7일 유흥종의 밀고장 초입부분, “吾當爲此島主耳”(“내 마땅히 이 곳의 도주가 되리라.”)에서 비롯되었다.

“이 섬의 民生은 요즘 부역이 고통스럽고 무거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편안하게 할 길이 없다. 내가 바야흐로 衆民을 위해 살 길을 마련할 텐데 반드시 營門과 三邑의 네 官長을 살해해서 합하여 하나로 만든 뒤에라야 민폐를 없앨 수 있다. 이 거사가 성공하면 내가 당연히 이곳의 도주(島主)가 될 것이다.”<sup>105)</sup>

거사 한 달 전 쯤(10월 16일이나 17일)에 밀고자 윤이 건입동 살 때 동무였던 양제해에게 들었다는 내용이다. ‘작별국’의 그림자만 비쳤을 뿐 아직 그 실체는 안 보인다. 도주되기와 별국창설 사이의 간극은 크다. 목사도 도주이므로 그 틈을 좁혀야 한다. 아래 기록은 제2차 추핵

---

105)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p.403.

(11월 7일~9일. 제1차 추핵은 양을 죽인 10월 그믐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때 양제해가 공초한 내용이다.

⑦ “土船은 육지출항을 금지시키고 陸船이 오면 재물을 빼앗고 배를 뒤집어서 北路를 막아 네 자신이 島主 될 계획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헤아리기 어려우나 오히려 한 구석에서 볼 때 그 반대 근거가 된다. 바로 네가 別國을 만드는 상황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다(作別國之狀之然可知).”<sup>106)</sup>

⑧ “오직 제주 이 한 섬을 내 소유로 만들려는 마음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惟一島作爲吾有之心 其來久矣).”<sup>107)</sup>

⑦은 추핵관 목사의 질문이고 ⑧은 양제해의 답이다. 도주설이 작별국설로 진화한 것이다. 총 한 자루, 화약 한 균 없이 양제해가 제주의 다른 나라(濟州別國)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죽은 양제해의 입을 빌어 확인한 도주설에서 작별국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중간에 중인들의 의견이 갈린 일인주장설(一人主掌說)과 삼읍분장설(三邑分掌說)이 있었다. 세 읍을 점령해서 살해한 관장 네 명, 즉 제주목사·정의수령·대정수령·제주판관 특히 세 읍 관장에 거명된 인물이 누구냐 물었을 때 나온 중인들의 양설이었다. 일인주장설은 물론 양제해를 지칭한 것이었다. 제2차 추핵 때 姜成五(강필방의 아들) 만이 일인주장설을 공초했고,<sup>108)</sup> 3명은 분장설을 자백했는데 姜必方은 제주 양제해·정의 양인복·대정 김익강 이라고 했고,<sup>109)</sup> 씨름꾼 文彭

106)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梁濟海更問目’

107)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梁濟海更問目’

108)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姜成五問目’

109)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姜必方問目’

年도 營門 양제해·정의 양인복·대정 김익강이라 했다.<sup>110)</sup> 姜成圭(강필방의 아들)는 제주 양제해·두읍 김익강 형제라고 했다.<sup>111)</sup> 물론 양제해의 말을 기억해서 공초한 것. 제3차 추핵 때 姜成玉(강필방의 아들)은 영문 양제해·정의 김익강·대정 양인복이라고 했고<sup>112)</sup> 白光賢(고덕호 사위)은 “목사는 당연히 양제해이다.”고 단언했다.<sup>113)</sup> 분장설이 5명, 일인설이 1명이었다.

문제는 제3차 추핵 때 마지막 심문에서 생겼다. 양제해의 아들이자 뒤에 연좌율로 효수당하는 日會가 뜻밖에 “제주 목사는 高德好입니다.<sup>114)</sup>”고 하여 바로 그 앞서 심문 받았던 아버지의 ‘작별도국’을 인정하는 ‘제주섬소유설’을 뒷받침했다. 빨리 죽여 달라 애원하는 상황에서<sup>115)</sup> 나온 일회의 자백이었다.

증언에서 분장설이 6:1로 우세한 가운데 2차 추핵 시 18명 중 맨 마지막에 배치된 양제해 부자가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아버지는 별도국 창설의 섬 소유설로, 아들은 제주목사 자리에 핵심 고덕호를 주장함으로써 밀고자 윤광종이 제해에게서 들었다는 도주설(島主說)이 끝내 별국창설로 낙착된 셈이다. 죽은 입과 산자의 입에서 짜 맞춘 별도국 이었다.

110) 「日省錄」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文彭年問目’

111) 「日省錄」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姜成圭問目’

112) 「日省錄」순조 13년 12월 3일. “제1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姜成玉問目’

113) 「日省錄」순조 13년 12월 3일. “濟州牧使金守基以罪人白光賢等供招馳啓”

114) 「日省錄」순조 13년 12월 10일.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梁日會問目’

115) 「日省錄」순조 13년 12월 10일.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梁日會問目’

### 3) “나는 梁乙那의 후손으로 김통정(金通精) 장군이다.”

나라를 세우는데 뛰어난 장수는 필수다. 전통시대 반란군의 사령관은 뛰어난 장수여야 한다. 아니다. ‘뛰어난 장수’를 뛰어넘는 만능의 지혜와 용력이 있어야한다. 초인이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백성의 확실한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백성의 동조나 참여는 어렵다. 예컨대, 조선 후기 역모의 지도자들이 천민출신인 임경업 장군(1954~1646)의 후손임을 전파하거나 조선왕조의 개창에 적개심을 품은 반역의 화신 최영장군(1316~1388)의 혼령이 늘 보호해준다는 홍보나 전봉준(1855~1895)이 백성의 영웅 대원군(1820~1898)을 끌어들인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경래난’ 때도 그랬다. ‘애초부터 별데 같은 미물 경래’ 때문에 잠 설치고 밥맛도 잊었다는 임금도 홍의 반란군 뒤에는 “세상을 구할 성인 鄭濟民의 10만 철기(鐵騎)가 버티고 있다<sup>116)</sup>는 격문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 반란군에 가담하고 싶다던 양제해를, 상찬계는 고려와 원에 반역하는 삼별초의 사령관 김통정(金通精 ?~1273)에 비견하였다.<sup>117)</sup> 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릎을 탁! 하고 췌을 호재였다. 김통정은 제주에서 당시 인기있는 설화의 주인공들 가운데 하나였다.

김통정의 등장은 화약 조총 철편의 무래설로 ‘죽었어야 할’ 김광정의 입을 통해서였다. 때는 제2차 추핵 때(11월 13일~16일 또는 16일 직

116) 평서대원수(平西大元帥) 홍경래가 1812년 12월 18일 다복동에서 ‘반란’의 가치를 치켜들면서 만방에 선포한 격문이다. 물론 즉각 이 내용이 조정에 보고되었다.

117) 김통정은 1270년 裴仲孫이 개경환도를 반대하며 삼별초를 거느리고 대몽항전을 할 때 장수로 참가, 진도를 거점으로 남해안 일대를 장악하기도 했다. 1271년 金方慶, 炯都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함락하자, 제주도로 후퇴 홍파두리를 거점으로 제주섬을 3년간 지배. 1273년 4월 160척 1만 병력의 김방경부대에게 괴멸 당했다. 고려와 원에 저항한 김통정의 자주의식이 평가되기도 한다.

후<sup>118)</sup>).

① “내(김광정)가 출육하려 할 때 賊 海가 이르기를 ‘옛날 반역장수 김통 정(叛將 金通情)이 이 섬을 지배했을 적에 民役은 회(灰) 석 되에 빗자루 한 개에 불과했는데 한번 조선에 조공(朝貢)을 바친 이후부터 부역이 점증 했으니 군사를 일으켜 성을 공격 탈취하고 북쪽의 바닷길(北路)를 막으려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sup>119)</sup>

② “옛날 반역장수 김통정은 흉악한 적이다. 적 海가 이것(此)을 자신에 비견했는데(自比) 네(김광정)가 이 얘기를 듣고 애초부터 官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이미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다.”<sup>120)</sup>

①은 물론 김이 전한 제해의 이야기이며 부역의 경증을 비교하면서도 김통정=양제해라는 자비(自比)설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다. 전단계인 것이다. ⑦의 추핵 직후에 순전히 김통정 문제로 김광정을 재추핵(更推) 했을 때, 마침내 ②에서 자비설이 나왔다.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협의가 짙으며 혹여 김통정 자비설의 제공으로 김광정이 살아난 게 아닐까. 백 보 양보하여, 정녕 양제해가 변란을 모의 했을 경우 자비김통정설(自比 金通情說)은 반란 절차상 주요 항목으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⑦의 의미를 더 살펴보자. 조선과 극명하게 대비시켜 돈이나 쌀 대신 받는 김통정 지배시대의 ‘회와 빗자루’는 제주 백성의 민생안정을 기하

118) 김광정은 8월 3일 제주를 떠나 11월 16일 돌아왔다. 출육해서 돌아온 바로 이날 양제해가 죽었고(목사의 조작), 또 이날이 야말로 반란군이 제주성 동녘 가령숲에 매복하는 날짜였다.

119)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假吏金光鼎 問目’. ‘賊海’는 역적 양제해인데 역적일 경우 성을 아예 빼버리고 ‘제해’ 또는 ‘해’로 쓰는 게 당시의 세속이었다.

120)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罪人金光鼎更問目’

는 애민(愛民)의 구현자로서 이미지와<sup>121)</sup> 함께 뛰어난 전략가로서 보민(保民)의 수호자 이미지가 그 배면에 포장 되었다. 즉 외적이 물마루에 보이면 비축해 놓았던 재를 토성위에 뿌리고, 빗자루를 말꼬리에 달아 메어 채찍질 하면서 성 한바퀴 돌면 뾰얗게 인 먼지 안개 때문에 적이 방향을 잊고 퇴각한다는 것이다.<sup>122)</sup> 당대 섬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설화였다.<sup>123)</sup> 저들이 이 설화를 악용한 것이고 양제해는 이 설화의 회생자였다.

저들의 간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제주도의 '시조신화'까지 차용 한 것이다. 마침내 목사는 마지막인 제2차 치계의 결론 부분 첫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요즈음 이번 옥정(獄情 : 반역사건의 실정)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아! 저 적 海(제해)는 탐라섬을 가리켜 양가의 옛터라 이르고(耽羅一島指謂梁哥之舊地) 자신을 옛 반역의 장수 金通精에 비유하고는 처음부터 요사스러운 金益剛과 혼인을 맺고 반역의 절차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여 서로 우두머리가 되어 도모했습니다.”<sup>124)</sup>

121) '회석되와 비한자루'로 상징되는 김통정시대의 가벼운 부담은 당시 사정과 거리가 멀다. 1271년 입도한 김통정은 주민들을 노역에 동원시켜 방어시설을 만들게 하고 군비조달을 위해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역사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구비문학에서는 분명히 드러난다. 이남옥, "김통정설화연구"(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국문초록>.

122) 현용준, 「제주도전설」(서울:서문당, 2002), p.96. 「김통정장군」, pp.94-101.

123) 김통정의 설화는 “역사적 관점에서는 역적이나 적당의 우두머리로 인식되고 있지만 민중들이 인식하는 김통정은 피지배층을 구원해주는 영웅적 존재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통받는 민중, 도탄에 빠진 백성, 지배층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민중들을 구원하려 하였다.” 이만옥, “김통정설화연구”, p.72의 註6) 참조.

124) 「日省錄」 순조 13년 12월 10일. “제2차 濟州牧使金守基馳啓” p.426. 김수기 목사의 제1차 치계 '罪人高元昌問目'을 보면, 양제해가 고원창에게 병사모집을 부탁하면서 “제주의 황무지를 개간한 분이 高乙那”이므로 너의 모병은 쉽게 되리라는 격려

“탐라섬을 가리켜 양가의 옛터라 이르고”는 별도국의 창설자 양제해에게 탐라의 시조신화 양을나(梁乙那)의 후손으로 그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조치였다. 겸해서 눈에 띄는 대목은 김의강에 대한 상찬계와 목사의 집요한 분노의 표출이다. 인격자로 대우했던 칠리사 이재수와 전혀 딴판이었다. 그러나 칠리사 이재수도 김의강이 양제해에게서 들었다는 양을라 후손설을 받아 들였다.

“(칠리사가 김의강에게) 또 묻기를 ‘제해가 乙那 후손으로 島中主人이라 지칭했다는데’ 했더니 ‘경계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자백한 것 같으며 경계와 꾸짖음도 진정이었습니다. 제해의 흥심을 그는 원망하면서 간파하고 있었습니다.”<sup>125)</sup>

이재수는 ‘모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인격자 김의강의 ‘을라 후손 도주설’을 추인하면서도 ‘별국’의 용어를 분명히 기피했다. 도주는 될 수 있으나 ‘작별국’까지 아니란 강력한 암시였다.

상찬계와 목사는 당시 상식이었던 김통정 설화와 탐라시조신화를 차용하여 양제해의 별국창작설이라는 그럴 듯한 신념체계를 구축하였다. 물론 조정을 현혹시킬 조작이었다. 양제해가 실제로 변란을 모의했다손 치자. 도탄에 빠진 제주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민생안정책의 제시가 배제된 이 별도국 창설에 얼마나 동조했을까. 군사력의 준비가 완전했더라도 동조했을까.

---

를 한 바 있다.

125) 『日省錄』 순조 14년 윤2월 14일. “察理使李在秀分重馳啓”, ‘金益剛則’

#### 4. 맷음말

1813년 음력 시월 그믐날 사건은 양제해와 제주백성들의 등소모의였지 변란모의(謀變)가 아니었다. 당시 황금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던 제주 섬 서리들의 이권조직(鎮撫吏·鄉吏·假吏 중심), 상찬계가 꼭두각시 목사를 앞세워 그럴 듯하면서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각본을 통해 등소 모의(謀等)를 반란음모(謀變)로 낙인찍은 조작극이었다.

등소모의는 소박하게 시작되었다. 부모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서로 돋는다는 상계(喪契)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작계에서 계원이 증가하여 등소모의 하는 단계로 확대되었다. 장두 양제해와 30 여 제주백성의 분노가 등소모의로 결집되어 그 칼 끝이 상찬계를 겨냥했다.

상찬계와 목사는 빨빠르게 행동했다. 전통적인 멸구책(滅口策)을 떠 올린 상찬계는 그믐날 밤에 장두 양제해(1770~1813)를 변란의 수괴로 못 박고는 등소자체를 변란으로 둔갑시켜 그 이튿날 죽여 버렸다. 역모나 대역죄인이 자복하지 않고 고문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범인은 역모나 대역죄인의 혐의는 있으나 그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좌도 행해지지 않는(단 대역죄인의 직계는 예외) 것이 관례였다. 제주목사 이자 武人 김수기(別軍職출신)는 달아 올랐다. 모변의 근거가 거창해야 했고 변란의 규모가 커야만 했다. 우선 파직을 면하고 상찬계의 전성시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현혹시켜 빨리 '모변'을 추인 받아야 할 절박함이 그들을 옥죄었다. 해서 나온 것이 梁의 서변투적(西變投賊)설이요, 당시 백성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던 설화의 '아기장수'이자 고려조의 반역장수 김통정을 양제해가 자신에게 비견시켜 제주독립국인 별국(別國)창설을 도모한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여기에 탐라시조신회를 차용, 양을라(梁乙那) 후손임을 곁들여 별국창설에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狀頭 양제해는 하루아침에 조선 국체에 반역하는 역모대역죄인의 거괴(巨魁)로 둔갑해 버리고 만 것이다.

이런 상부의 틀에 대응하는 하부각본도 거창했다. 모집한 9백명의 정예부대가 조총 포 화약 철편으로 무장, 제주·정의·대정, 세 읍에 3백 명씩 동시에 투입 공격 점령한다는 내용이었다. 양제해말고도 6명이나 장살당하고 60명 거의가 반병신이 되다시피 한 고문의 폭력과 협박 속에서도 어느 것 하나 입증하지 못했다. 군사 한명 조총 한 자루 밝혀내지 못했다. 물증은 그 그림자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조정은 1813년 12월3일 도착한 제주목사의 추핵치계를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모변을 인정하는 임금(당시 13세)의 교서를 내렸다. 제주도에 또 하나의 홍경래가 나타난 것으로 단정해 버린 결과였다. 이는 조정대신들에게 악동으로 남았던 이른바 홍경래난의 위력을 입증하는 생생한 자료인 셈.

이재수가 두 단계 특진되어 찰리사겸위무사(察理使兼慰撫使)로 내정, 제주에 도착했다. 즉시 현지에서 등소모의했음을 간파한李는 조정대신이 못박은 '모변'을 추종하면서도 등소모의를 인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등소하는 즉시 변란을 일으킨다는(外托等訴 內懷犯官) 취지였다. 상찬계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상찬계추핵에는 실패했지만, 제주목사 김수기, 대정현감 권취일을 파직시켰고, 억울하게 처리되었던 여러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이재수는 '하늘이 내린 신선'으로 추앙되었다. 임금과 조정대신이 인정한 '모변'을 뒤집기에는 당연히 역부족이라 여겨지지만, 찰리사 이재수는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소인정이라든가 추핵의 공포분위기 제거, 각종 민원해결에서 보았듯이, '모변'의 허구를 알면서도 인정해야 하는 마음의 고통, 이것을 등소인정으로 조금이라도 완화해보려는 조선시대 양심적인 관료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소품은 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두 번 자행한 폭력의 고발이라 할 수 있겠다. 1813년 초겨울 제주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가한 고문 폭력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고문의 결과 날조된 허위자백만을 사료로 잔존시키는, 역사진실에 가하는 조작폭력이다. 이 소품이 200년 가까이 '죄인'으로 몰렸던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당시 공포 분위기에 짓눌렸던 제주백성(民人)들에게 조선시대판 '빨갱이'에서 선량한 백성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해원이 되길 기대한다.

金益剛(1853~?)의 무기한 외딴섬 유배(勿恨年絕島定配) 또한 하늘 이 내린 선물이었다. 제주백성의 인망을 한몸에 모았던 세족향리(世族鄉吏) 김익강은 '모변'의 또 다른 한명의 피수로서 주살(誅殺)당함이 예약되었으나, 이제수가 살려냈다. 제주백성 모두가 상찬계의 보복이 무서워 합구수설(含口囚舌) 할 때, 그만이 협조하는 용기에 탄복하면서 동시에 그의 인품에 반한 결과였다. 일률(一律) 즉 사형에서 감일등하여 흑산도로 종년정배형. 1818년 그곳에서 마침 정약용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즈음 어찌해서 흑산도로 들어온 다산의 수제자 이강희를 만나게 되었다. 피부로 느껴왔던 '모변'의 실상을 구술 받아 엮어낸 책이 바로 李강희의 「상찬계시말」이었다. 하마터면 묻혀버렸을 1813년 제주 섬 '모변'의 실상이 —고문의 허위자백으로 엮어진 조작기록이 '역사의 사실'로 200년 가까이 굳어져 온 '모변'의 실상이— 2008년 이를 통해 드러났다. 자세히 보니, 관찬사료는 뒤집고 바꾸고 줄이고 보태고 깎고 없애고 해서 만든 조작의 만화경이었다.

1818년 흑산도에서 이 「相贊契始末」을 만든 두 분의 만남은 척박한 변방, 그것도 절해의 외딴섬에서 피워 올린 조선지성사의 꽃이었다. 뿐만 아니라 변방 지식인 이강희는 다산의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여 '민란'을 보는 측면에서 다산보다 더 깊은 애정을 지닌 진보사관의 소유자였다.

이강회가 흑산도를 오가는 제주인을 통해 —유배온 김익강의 뛰어난 인품 때문에 멀시 받던 제주인을 격상시킨 흑산도에서 그 제주인을 통해— 탐문한 바에 따르면, 등소모의의 狀頭이자 ‘반란모의’의 巨魁였던 梁濟海(1770~1813)는 사후 곧 영웅과 폐족(廢族)을 오가는 회비쌍곡 선을 긋고 있었다. 梁은 ‘금세의 項羽’로 추앙되었다. 하루에 세 번 한라 산을 도는 그가 정상에 오를 때마다 八陳法을 몰래 연습하며 그의 집에는 청총마, 3백필 神銃 수백자루, 산적한 궁시, 몰래 축적한 利金이 있다는 전설(‘相贊契始末’, ‘梁濟海傳’)이 ‘모변’을 겪는 과정에서 생겼다. 제주섬을 휘감은 모변의 공포 분위기에서 이심전심 백성의 심장에 각인된 비원이었다. ‘양의 반란이 정녕코 성공했어야 하는데…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동시에 양의 가족은 폐족이 되었다. 큰 아들 日會가 효수 당했고 작은 아들 日新이 외딴 섬으로 정배되었다.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힌 집안이 되었기에 양제해 친인척의 혼인줄이 막히고 살기위해서는 천역도 마다할 수 없었다. 영웅으로 추대하면서 폐족으로 멀시하는 당대 제주민인의 이 이중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겪었던 4.3 피해가족, ‘간첩가족’, 운동권 가족의 고초에도). 이 또한 당시에나 오늘이나 민중의 생생한 태도가 아니던가. 화가 치민 이강회는 그 심회를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제주백성들이여 어찌해서 양제해의 영혼에 한번도 제를 지내지 않는가.  
어찌해서 그의 고혼을 한번도 위무하지 않는가?”(‘相贊契始末’, ‘梁濟海傳’)

1813년 초겨울 제주백성과 양제해가 일으킨 등소모의는 錢神崇拜로 뭉친 음모와 탐욕의 아전집단, 상찬계의 무한질주궤도에 폭약을 매설하려다 발각된 제주민중의 만만치 않은 저항운동이었다. 이 저항은 19세기 후반에 줄 이은 이른바 제주의 민란시대 즉 1862년 제주민란, 1890

년 경인민란, 1896년 병신민란, 1898년 방성칠난, 1901년 이재수난에 선행하는 제주민중반란사의 작지만 위대한 서장이었다. 그리고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개혁을 지향하는 제주변혁운동의 적지만 심장한 울림의 서곡이었다. 이 중심에 '제주섬의 홍경래', 양제해가 우뚝 섰다. 조선시대 제주민중반란사와 변혁운동사의 최초 순교자로서, 민중저항사에서 제주는 조선의 변방이 아니었다.

이 소품을 만드는 동안 일어난 일 2건. “이른바 오송회(五松會)사건이 재심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27년 전 4·19행사를 치르고 군산 제일 고등학교 전현직 교사들이 모여 시국 토론을 벌였다. 김지하 시 ‘오적’도 낭독했다. 경찰은 이들을 이적단체로 엮어 버렸다. 오송회란 사건 명칭은 5명의 교사가 학교 뒷산 소나무 아래 모였다고 해서 경찰이 멋대로 지은 것. 이들은 연행되어 통닭구이,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온갖 고문을 당했다. 경찰은 계보도를 만들어 놓고 이에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처음에는 살려달라 애원하다 나중에는 제발 죽여 달라고 했다.”(경향신문, 2008년 11월 21일). 전주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열심이신 조성룡 선생님이 떠올랐다. 이미 70을 바라보시는 그분에게 청장년은 송두리째 찢겨나간 세월이었다.

또 하나. “피고인은 무죄.” 40여 년 동안 기다리던 한마디에 배경옥(70)씨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신앙과도 같은 반공·반복이념이 지배하던 시기의 허다한 간첩사건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 배씨는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졌을 뿐, 기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고문과 조작, 허술한 재판 끝에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배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 뒤 20년을 쇠창살 안에서 살았다. 감옥 문을 나선 배씨에게는 또 다른 천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속 당시 4살짜리 아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면회를 못 오게 했다. 배씨는 “간첩아들로 살 아갈 생각을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과 구속당시 한살어린 딸은 엄마 밑으로 호적을 옮겨놨다.(한겨레, 12월 20일)

'모변'의 추핵일지

- 순조 13년 10월 30일 (1813) 제주 아리동에서 30여 명 모여 等訴 모의. 장두로 양제해 추대, 곧 해산.  
밤, 윤광종(양의 어릴적 동무)의 밀고 (상찬계 핵심 김재겸에게). 삼경, 윤광종 명의 告變狀 작성, 목사에게 제출. 양제해 체포. 고문 시작. '모변' 자백 강요.
- 11월 1일 양제해 자살 위한 탈옥. 곧 체포, 재수감 됨. 양제해 옥사.(「相贊契始末」에 따름)  
제1차 추핵. 30여 명 '모변'여부 추핵
- 11월 7일 윤광종 이름의 進告狀(密告狀) 다시 목사에게 제출.  
제2차 추핵 (9일까지).  
추핵내용 : 攻城계획, 4관장 살해계획, 거사 성공 후 4官長 임명, 募軍, 武器구입, 양제해의 홍경래의 난 참여설(西交投賊說), 양의 島主說, 양의 別國창설설.
- 11월 9일 밤, 양제해 탈옥.
- 11월 13일 봉개리에서 체포. 재수감 됨.  
제3차 추핵 (16일까지).  
추핵내용 : 2차의 추핵의 내용을 계승함.  
별국창설 확정, 양의 고려조 반장(叛將) 金通精 自比說, 탐라 시조설 차용.
- 11월 16일 양제해 장살 당함. (『日省錄』에 따름)
- 12월 3일 김기수 목사 제1차 馳啓(금보), 조정에 접수.  
출륙한 제주인 범죄자 전라도에서 체포 요구하는 장계, 조정에 접수.
- 12월 5일 임금의 教書 '諭濟州民人等' 발표.  
'모변' 사실로 인정.  
찰리사 겸 위무사 李在秀 임명(差下).
- 12월 10일 김기수 목사의 제2차 치계, 조정에 접수.  
장살 당한 7명 중 5명의 명단, 조정에 접수.  
7명 장살로 인한 김목사의 파직장계 접수(전라감사 작성).

|                         |  |
|-------------------------|--|
| 순조 14년 2월 13일<br>(1814) | 찰리사 이재수 제주 도착.<br>추해날자는 언제인지 모름.<br>공포분위기 제거, 몇 가지 민원해결, 두드러진 탐관오리 제거(목<br>사 김기수, 정의수령 권취일의 파직 요청, 대표적 오리(汚吏) 척<br>결), '하늘이 내린 신선'이라 이재수를 칭송.<br>상찬계 해체는 실패. |
| 윤2월 14일                 | 찰리사의 종합보고서 치계, 조정에 접수.<br>等訴모의와 變亂모의 동시 인정<br>2명 효수, 6명 무기한 섬유배, 4명 유기한 섬유배. 25명 석방을<br>임금에게 요청.   |
| 윤2월 19일                 | 찰리사의 형량 보고, 임금이 윤허.<br>고덕호 양일회(제해의 아들) 효수형 집행 명령.<br>밀고자 하인(상찬계 혁신 김재겸의 下人) 윤종광이 明月鎮萬戶<br>로 임명(임지에 이르기 전 역병에 걸려 사망)  |
| 3월 5일                   | 養老宴 열린다는 치계, 조정에 접수.<br>정의현감 권취일 파직 윤허.  |
| 4월 7일                   | 제주도의 民弊·邑瘼, 그 矯革의 내용 치계로 조정에 접수.   |
| 4월                      | 제주목사 金守基(전別軍職) 파거.   |

## 찰리사와 목사의 형량 비교

| 이 름 | 직 역      | 관 계        | 찰리사       |              | 목사   |                   | 비 고        |
|-----|----------|------------|-----------|--------------|------|-------------------|------------|
|     |          |            | 형량        | 혐의           | 형량   | 혐의                |            |
| 高德好 | 千擔<br>一校 |            | 一律        | 徒黨首者<br>攻城계획 | 同謀律  | 主謀者 군량<br>목사      |            |
| 梁日會 |          | 제해의子       | 一律        | 兇惡之種<br>연좌   | "    | 조천鎮將              |            |
| 姜必方 |          | 제해妾의<br>당숙 | 無期限<br>島配 | 徒黨首者<br>모군약속 | "    | 主謀者<br>20명 모병     |            |
| 梁仁福 |          | 제해의<br>近族  | "         | 徒黨首者<br>모군약속 | "    | 정의대 정수령, 정<br>의모병 | 제해와<br>친숙  |
| 金益剛 |          | 제해의<br>장인  | "         | 徒黨首者         | (誅殺) | 主謀者 대정정의<br>수령    |            |
| 金昌瑞 | 儒生       | 제해의<br>内從弟 | "         | 徒黨首者<br>모군약속 | 同謀律  | 書札작성<br>'狂狗盲馬'    | 거사에<br>연서찰 |
| 梁日新 |          | 제해의<br>子   | 島配        | 兇惡之種<br>연좌   | 同謀律  | 연좌                |            |
| 梁日彬 | 儒生       | "          | "         | "            | 干連   | "                 | 年幼<br>夢駿   |
| 姜成三 |          | 제해의妾<br>婢  | "         | 徒黨之目         | 干連最繁 | 모병 화북鎮將           | 쑥맥         |
| 姜成圭 |          | "          | "         | "            | 情狀參酌 | 모병<br>領軍將         | 쑥맥         |
| 高元昌 | 牧吏       |            | "         | 모군약속         | 同謀律  | 50명 모군 내용자        |            |
| 李愛昌 | 牧校       |            | "         | 徒黨之目         | 干連最繁 | 내용자               | 不勝<br>刑杖   |
| 金殷寶 | 旗牌       |            | 保放        | 近干連<br>可恕    | 知情不告 | 同情                | 참여강<br>력거절 |
| 文彭年 |          |            | "         | "            | 干連最繁 | 선봉장               | 씨름꾼<br>極無知 |
| 姜先貴 | 冶匠       |            | "         | "            | "    | 鐵鞭제조              |            |
| 金順瑞 | 儒生       | 昌瑞의<br>동생  | "         | "            | "    | 同參逆謀              |            |
| 白光賢 | 閑良       | 고덕호의<br>사위 | "         | 近干連<br>可恕    | 干連   | 대정모군              | 愚氓         |

| 이름  | 직역 | 관계        | 찰리사      |            | 목사   |                 | 비고         |
|-----|----|-----------|----------|------------|------|-----------------|------------|
|     |    |           | 형량       | 협의         | 형량   | 협의              |            |
| 姜成玉 | 儒生 | 必方의<br>子  | 保放       | 近干連<br>可恕  | 情狀參酌 | 모병<br>兵裨        | 사환<br>쑥맥   |
| 高士陸 | 假卒 | 德호의<br>子  | "        | 父罪에<br>不然座 | 情狀參酌 | 동참<br>禮神        | 쑥맥         |
| 金五幅 | 儒生 | 翌剛의<br>子  | "        | "          | 干連   | 동참              | 風病<br>極愚駭  |
| 金五傑 | 儒生 | "         | "        | "          | "    | "               | 風病<br>極愚駭  |
| 金五榮 | 儒生 | "         | "        | "          | 干連最緊 | 座首              | 極愚駭        |
| 梁廷燁 | 儒生 | 제해의<br>叔  | 特爲<br>放送 | 무협의        | 同謀律  | 흉모참여<br>정의수령    | 不勝<br>刑杖   |
| 梁廷贊 | 儒生 | "         | "        | "          | 干連   | 흉모참여            | 老病昏        |
| 梁廷煥 | 儒生 | "         | "        | "          | "    | "               | 極愚蠢        |
| 金光鼎 | 假吏 |           | "        | 落空斗<br>誤招  | 知情不告 | 무기구입<br>무협의     | 김동정<br>설제기 |
| 宋益大 | 萬戶 |           | "        | "          | 협의輕  | 作契主謀            | 70老人       |
| 田京祿 | 儒生 | 제해의<br>妹夫 | "        | "          | 干連最緊 | 거병동참            | 多被<br>重杖   |
| 吳德圭 | 儒生 | 제해의<br>甥  | "        | "          | 嚴囚   | 모군              | 제해<br>不親   |
| 吳義圭 | 儒生 | "         | "        | "          | "    | "               | "          |
| 白仁好 |    | 제해가<br>돌봄 | "        | "          | 情狀參酌 | 대장 김별감 편지<br>전달 | 年幼<br>우매   |
| 咸恒太 | 旗牌 | "         | "        | "          | 情狀參酌 | 參涉謀變            | 빈궁<br>無依者  |
| 姜成五 |    | 제해의첩<br>甥 | "        | "          | 情狀參酌 | 모군              | 쑥맥         |
| 文彭壽 |    | 평년의<br>동생 | "        | "          | 情狀參酌 | 同情              | 年殘우<br>매거지 |

| 이 름 | 직 역      | 관 계        | 출리사      |            | 목사    |                      | 비 고         |
|-----|----------|------------|----------|------------|-------|----------------------|-------------|
|     |          |            | 형량       | 협의         | 형량    | 협의                   |             |
| 姜成玉 | 儒生       | 必方의<br>子   | "        | "          | 情狀參酌  | 모병<br>兵神             | 사환<br>속액    |
| 高尚德 |          |            | 特爲<br>放送 | 落空斗<br>誤招  | 情狀參酌  | 僞差把摠                 | 家貧<br>속액    |
| 韓宗孝 | 牧校       |            | "        | "          | 牢囚後處分 | 제해의<br>운수점침          | 점쟁이         |
| 夫昌蕃 | 牧子       |            | "        | "          | 干連    | 재해탈옥때침<br>에서보호       | 30대<br>(訊杖) |
| 梁廷夏 | 수직<br>장교 |            | "        | "          | 干連    | 재해탈출<br>방조           | 多被<br>周牢    |
| 高時彥 |          |            | 放送       | 募軍錄<br>무협의 | 無記錄   | 無記錄                  | 募軍錄<br>燒火設  |
| 金汝祥 |          |            | "        | "          | "     | "                    | "           |
| 金德厚 |          |            | "        | "          | "     | "                    | "           |
| 金元周 |          |            | "        | 僞帖<br>무협의  | "     | "                    |             |
| 高仁采 |          |            | "        | 募軍錄<br>무협의 | "     | "                    | 募軍錄<br>燒火設  |
| 高士宗 |          |            | "        | "          | "     | "                    | "           |
| 高鳳集 |          |            | "        | "          | "     | "                    | "           |
| 高漢尙 |          |            | "        | "          | "     | "                    | "           |
| 高德厚 |          |            | "        | "          | "     | "                    | "           |
| 高德宗 |          | 덕호의<br>동생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干連最繁  | 同謀                   |             |
| 咸光集 | 牧旗手      | 제해妾의<br>四寸 | "        | "          | 放送    | 제해탈옥때<br>妻 음식제공      |             |
| 金光殷 |          |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都元帥(설)<br>무고로<br>밝혀짐 | 勇力<br>過人    |
| 高興德 |          | 상덕의 제      | "        | "          | "     | 同謀                   | 自手<br>農業    |
| 高尚仁 |          |            | "        | "          | "     | "                    | 협의완강부<br>인  |

| 이 름      | 직 역       | 관 계       | 찰리사          |             | 목사   |               | 비 고        |
|----------|-----------|-----------|--------------|-------------|------|---------------|------------|
|          |           |           | 형량           | 혐의          | 형량   | 혐의            |            |
| 文彥成      |           |           | 不問           | 無所犯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文彥長      |           |           | "            | "           | "    | "             |            |
| 文彥命      |           |           | "            | "           | "    | "             |            |
| 姜致甫      |           | 선구의<br>자  | "            | "           | "    | "             |            |
| 姜趾煥      |           |           | "            | 初不入募<br>落空  | "    | "             |            |
| 高漢永      |           |           | "            | "           | "    | "             |            |
| 康德信      |           |           | "            | "           | "    | "             |            |
| 金光祿      |           |           | "            | "           | "    | "             |            |
| 夫哥<br>2명 |           |           | "            | "           | "    | "             |            |
| 白哥<br>2명 |           |           | "            | 제해옥사<br>問無處 | "    | "             |            |
| 金信剛      | 儒生        | 의강의<br>弟  | 刑律 적용<br>불가능 | (杖殺)        | 干連最緊 | 정의수령<br>明月萬戶  |            |
| 高成太      | 軍器書<br>員  |           | "            | "           | "    | 화약, 조총<br>공급자 |            |
| 梁時彥      | 鎮撫吏<br>營吏 |           | "            | "           | 同謀律  | 擧兵擇日<br>내옹자   |            |
| 田必祿      | 儒生        | 제해의<br>姻姪 | "            | "           | "    | 後鋒將           | 逃避<br>(자신) |
| 무명<br>2인 |           |           | "            | "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이상은 양제해를 뼠 70명의 '죄인' 명단이다.)

(이 도표는 「일성록」 목사의 1차, 2차 駐啓와 찰리사의 駐啓에 의거함)

('落空'은 의심은 가나 혐의를 찾지 못함이고 '謀招'는 엉뚱한 사람을 문초함)

## 참고문헌

### 1. 자료

- 『耽羅職方說』, 「相贊契始末」 pp.315-341.  
『朝鮮純祖實錄』  
『日省錄』 pp.402-647.  
『承政院日記』  
『耽羅紀年』  
『牧民心書』  
『茶山學園文獻集成』 pp.315-341, pp.해제5-해제6.  
『역주탐라지』 p.258.  
이강희 지음, 현행복 옮김 『탐라직방설』, 각, 2008.

### 2. 저서

-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1·2·3』, 역사비평사, 2006.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pp.617-174.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박영사, 1968.  
이의권, 『조선후기 지방통치 행정연구』, 집문당, 1999.  
현용준, 『제주도의 전설』, 서문당, 2002. pp.94-101.  
현용준, 『제주도의 신화』, 서문당, 2005.  
백승종,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계임』, 푸른역사, 2006.  
백승종, 『예언가 우리의 역사를 말하다』, 푸른역사, 2007.  
이상배, 『조선후기 정치와 캐서(掛書)』, 국학자료원, 1999.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경인문화사, 2007. pp.280-281.  
이재철, 『조선후기의 비변사 연구』, 집문당, 2001.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정석종,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정석종, 1995.

### 3. 논문

- 권인혁, 「19세기초 양제해의 모변실상과 그 성격」, 『탐라문화』 7호, 1988. pp.127-151.
- 박찬식, 「양제해의 모변과 상찬계」, 『탐라문화』 33호, 2008. pp.167-197.
- 이만옥, “김통정 설화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 교육대학원), 2006. p.72.
-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 『한국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27호, 1991. pp.42-52.
-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향리총의 신분변동」, 『사학지』 28호, 1995.
- 임형택, 「다산학단에서 해양으로 학지의 열림-이강희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56호, 2006.
- 권기중, 「17세기 가리총의 형성배경과 그 존재양태」, 『역사와 현실』 제28호, 1998.

Abstract

Review of Yangjehae and Jeju People Mobyeon (謀變)

Kim, Cheong-Ki\*

This is an accusation against the dual violence of state power. One is the violence which was forced upon people at the scene and the other is the distorted violence which left only false confessions as a result of torture. Therefore, I have been trying to recover the honor of Yang Jae Hae who, though illiterate, was followed by many people and finally sacrificed his life for righteous affairs, two hundred years ago. In addition, I have been trying to console souls and recover historic honor for those six victims who were also flogged to death and the 60 left half-paralyzed, and marked as rebellious criminals.

It has been revealed that what really happened in 1813, in Ara village, Jeju, was not a rebellion but a simple gathering. It was only a meeting to rectify the exploitation and oppression by deputies who glorified their golden age with all manner of deception. Moreover, the appointed meeting failed to take place as word of it got out. However, the leader Yang Je Hae was immediately arrested and killed by torture by jeju governor on the very night he planned the gathering. The governor reported this simple gathering as an attempted rebellion. The government, which already went through the nightmare from Hong Kyung Rae's rebellion in 1812, declared it to be a rebellion with out hesitation.

---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Sang Chan Gye and the Jeju governor distorted various truths like the ones above as well as reporting the follow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a plot to prove a military rebellion. According to their plot, rebels had nine hundred recruits armed with rifles, guns, and gun powder brought from the mainland. They then attacked and took over Jeju, Jeong Eue, and Dae Jeong at the same time. Afterwards, they killed the superintendents of these areas; Yang Je Hae declared himself Jeju governor and Jeju as separate state from the nation. It was vicious plot supported by evidence contrived from bloody torture. However, all of these turned out to be false. The tragic Yang Je Hae was revived as a Jeju hero among its people.

I owe a great deal of respect to Kim Ik Kang and Lee Kang Hwe for restoring and consoling Yang Je Hae's soul with their collaboration on,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Sang Chan Gye'. In view of the fact that, Kim was suspected as the head planner of the rebellion, allowed provision of honest and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incident by Kim. Lee, a student of the well-known scholar, Da-San, drew out lively pictures based on Kim's story

(이 영문 작성에 도움을 준 직원 송지연님에게 감사드린다.)

**Key Words**

Dengsou(等訴), Mobyeon(謀變), Sangchangye(相贊契), Gongchou(供招),  
Chuhaeak(推覈), Chigye(馳楔), Mobyeong(募兵)

교신 : 김정기 690-781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4810번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총장실

(E-mail : jgikim@jejunu.ac.kr 전화 : 011-9409-8012)

최초 투고일 2009. 1. 20

최종 접수일 2009. 2. 17